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6.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세 진

차 례

I. 개 관	1
1. 조직 및 정원	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3
4. 재무결산	6
5.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검토내용	10
II. 결산 검토	15
1.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1001-100)	1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15
나. 총액인건비 외에서 총액인건비 내 보수(110-01)로 전용 부적정	15
2. 법령정보제공(1031-300)	2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23
나. 어플리케이션에서 한눈보기 서비스 및 만족도조사 실시 필요	24
다. 한눈보기 법령 오류제보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필요	28
라. 어린이법제관 수료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31
마. 청소년법제관 사업 실효성 재검토 필요	35

3.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	39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39
나. 남북법제 연구용역 연구방향 재정립 및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필요	40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4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45
나.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제고 필요	45
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위탁사업 성과지표 개선 및 실효적 홍보방안 마련 필요	53
5. 법령심사지원(1032-300)	58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58
나. 미제출 법률안 지속적 점검 등 전년도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실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59
6. 법제정비(1032-301)	6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66
나. 법령정비 과제 관련 법령 소관부처의 수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67
7. 행정법제 혁신(1032-302)	74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74
나.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법령 소관부처의 참여 제고방안 마련 필요	74
8. 법제업무무정보화추진(정보화)(1033-500)	8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82
나. 모니터링단 구성의 다양화 필요	83

9.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	87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87
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필요	88
다. 법제업무담당자 해외연수 등 법제처 국외업무여비 집행시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필요	91
10. 외국법제기관교류(1034-301)	9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96
나. 아시아 국가간 법제 교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97
[참고자료] 최근 3년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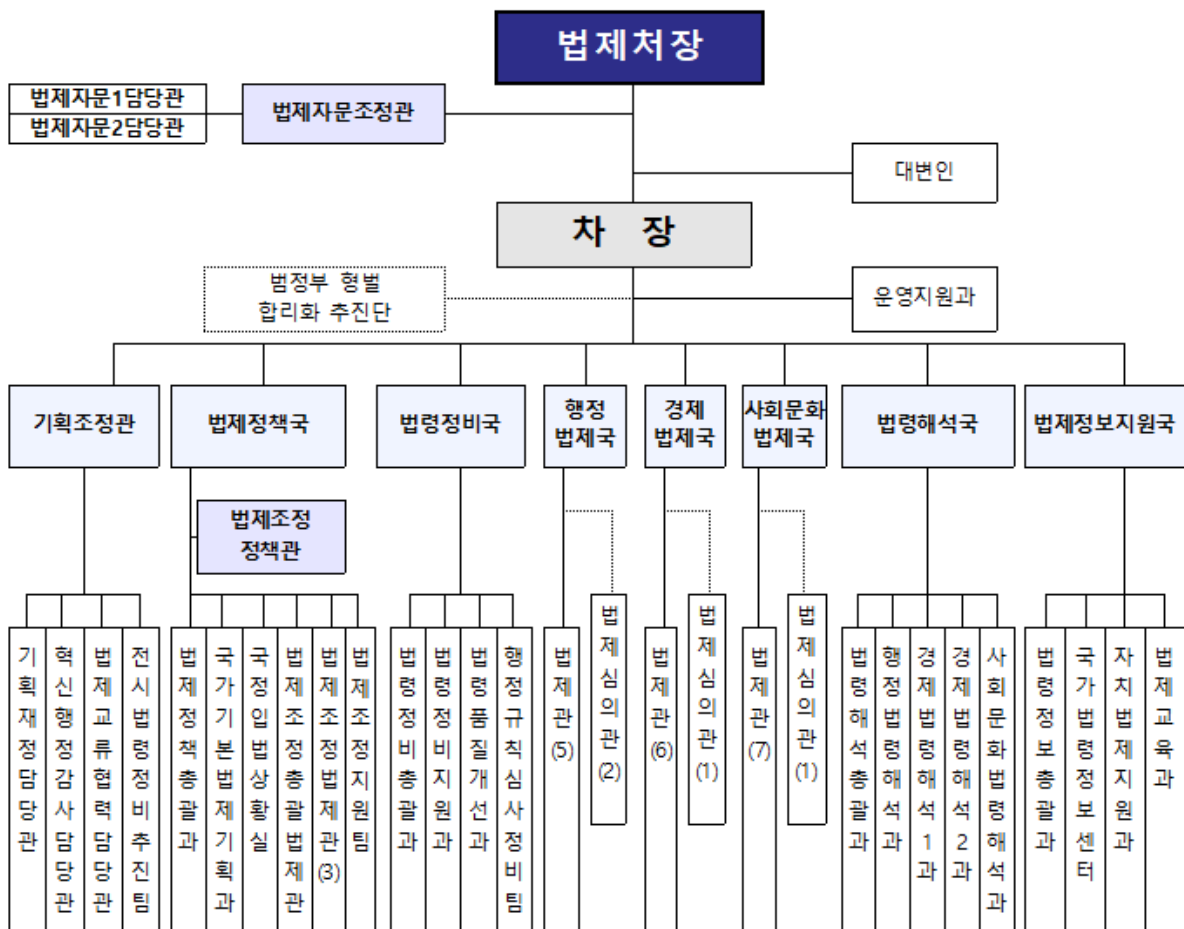
I. 개 관

1. 조직 및 정원

- 2026년 7월 기준, 법제처는 2조정관, 7국, 1정책관, 4심의관, 22법제관, 20과(담당관), 3팀으로 구성되고 별도의 소속기관은 없으며, 정원은 총 271명이고 현원은 총 242명임.

【 법제처 조직도 】

(2026. 7. 31. 기준)



【 법제처 정원 및 현원 현황 】

(2026. 7. 31. 기준)

구 분	합계	정무직	특정직	별정직	일반직
정 원	271	1	-	-	270
현 원	242	1	-	-	241

자료: 법제처

2.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22	22	-	100.0%	-	-

자료: 법제처

□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고, 징수결정액은 2,200만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음.

-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과년도 보수 환수 1,647만원과 관서운영비 과오지급 환급금 97만원, 보관금 국고환수금 497만원임.

【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결산			2025 예산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B/A(%)	
건물대여료	-	-	-	-	-	-
변상금	-	-	-	-	-	-
가산금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4	3	22	22	100.0%	-
잡수입	0.17	0.1	-	-	-	-
총 계	4.17	3.1	22	22	100.0%	-

자료: 법제처

3.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세출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 · 감(△)액			세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증 · 감액				
45,733	45,733	—	—	± 505	45,733	44,826	—	907

□ 2025회계연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57억 3,300만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0%인 448억 2,600만원이고, 전용액은 5억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인 9억 700만원임.

□ 지출액 448억 2,6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물건비가 385억 2,6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 중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인건비: 254억 4,500만원 (56.8%)
- 물건비: 130억 8,100만원 (29.2%)
- 이전지출: 49억 8,500만원 (11.1%)
- 자산취득: 13억 1,500만원 (2.9%)

□ 전용액 5억 500만원은 아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루어짐.

- 공무원 보수: 4억 7,200만원
- 교육훈련 대상자의 국외현장학습 국외교육여비: 3,300만원

□ 불용액 9억 700만원을 살펴보면, 각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8,000만원, 물건비 7억 4,200만원, 이전지출 8,200만원, 자산취득 200만원이 각각 불용되었고, 2025회계연도 이월액은 없음.

【 2025회계연도 법제처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42,622	44,290	45,733	45,733	44,826	98.0%	60,588
총지출	42,622	44,290	45,733	45,733	44,826	98.0%	60,588
정부입법 총괄지원	42,622	44,290	45,733	45,733	44,826	98.0%	60,588
1001 본부인건비	21,734	22,736	23,780	23,780	24,105	101.4%	24,948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1001-100)	21,734	22,736	23,780	23,780	24,105	101.4%	24,948
1011 본부기본경비	4,235	4,750	5,235	5,235	4,727	90.3%	5,377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011-200)	1,665	1,633	1,780	1,780	1,620	91.0%	1,784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2,570	3,117	3,455	3,455	3,107	89.9%	3,593
1031 법제정보서비스	3,997	4,540	4,596	4,596	4,488	97.7%	4,526
법령정보제공 (1031-300)	1,890	1,643	1,552	1,552	1,518	97.8%	1,436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031-301)	1,085	1,610	1,682	1,682	1,640	97.5%	1,616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서비스 (1031-302)	1,022	1,287	1,362	1,362	1,329	97.6%	1,474

【 2025회계연도 법제처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1032 정부입법 총괄관리	2,249	2,191	1,981	1,981	1,843	93.0%	1,744
법령심사지원 (1032-300)	354	286	311	311	286	92.0%	296
법제정비 (1032-301)	1,211	1,236	1,184	1,184	1,112	93.9%	1,145
행정법제 혁신 (1032-302)	684	669	486	486	446	91.8%	303
1033 법제업무정보화지원	8,687	8,435	8,046	8,046	7,799	96.9%	20,771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정보화) (1033-500)	8,687	8,435	8,046	8,046	7,799	96.9%	20,771
1034 법제전문성향상	1,646	1,574	2,045	2,045	1,820	89.0%	3,172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034-300)	1,412	1,294	1,802	1,802	1,584	87.9%	2,742
외국법제기관교류 (1034-301)	234	280	243	243	236	97.1%	430
1035 정책연구개발	74	64	50	50	46	92.0%	50
법제정책연구개발 (1035-300)	74	64	50	50	46	92.0%	50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A-B)	
			금 액	비 율
자 산	21,560	22,650	△1,090	△4.8 %
부 채	—	1	△1	△100%
순자산	21,560	22,649	△1,089	△ 4.8%

- 2025회계연도말 자산은 215억 6,000만원으로, 2024회계연도말 대비 10억 9,000만원이 감소함.
- 금융자산은 기타금융자산(기타의 기타금융자산)의 증가로 전년 대비 1,100만원 증가하였음.
- 일반유형자산은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및 기타일반유형자산의 신규취득으로 인해 전년대비 2억 8,400만원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으로 2억 3,600만원 감소하여 전기 대비 4,800만원 증가하였음.
-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1억 4,800만원 감소하였고, 기타자산은 기타의선급비용 등으로 인하여 100만원 감소하였음.
- 2025회계연도말 부채는 2024년도말에 유동부채로 집계되었던 예수금 (100만원)이 지급됨에 따라 차입부채는 100만원 감소함
-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말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억 8,900만원이 감소한 215억 6,000만원임.

나. 재정운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A-B)	
			금 액	비 율
수익(Ⅰ+Ⅱ)	38	19	19	100%
Ⅰ.이전수익 ¹⁾	—	—	—	—
Ⅱ.국가운영수익 ²⁾	38	19	19	100%
비용	49,782	48,185	1,597	3.3%
Ⅲ.이전비용 ³⁾	31	9	22	244.4%
Ⅳ.국가운영비용 ⁴⁾	49,751	48,176	1,575	3.3%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49,744	48,166	1,578	3.3%

□ 2025회계연도말 재정운영결과는 497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수익 중 이전수익은 없고, 국가운영수익은 1,900만원(100%)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타국가운영수익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주로 과오 지급회수금 증가에 기인함.
- 비용은 전년 대비 15억 9,7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전비용이 2,200만원, 국가운영비용이 15억 7,500만원 증가하였음.
- 이전비용은 기타이전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주로 포상금의 증가에 기인함.

1) 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2)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국세수익과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3) 이전비용: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

4)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 국가운영비용의 증가는 주로 인건비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15억 6,000만원 증가하였음. 그 밖에 운영비는 지급임차료 및 고용부담금 증가에 따라 2억 3,500만원, 감가상각비는 무형자산상각비 증가에 따라 6,3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국가운영비용은 연구용역비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억 8,300만원 감소하였음.

다. 순자산변동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A)	2024 (B)	증 감(A-B)	
			금 액(C=A-B)	비 율(C/B)
I.기초순자산	22,649	22,887	△238	△1.0 %
II.재정운영결과	49,744	48,166	1,578	3.3 %
III.재원의조달및이전	48,655	47,930	725	1.5 %
IV.조정항목	-	△1	1	100.0 %
V.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21,560	22,649	△1,089	△4.8 %

- 2025회계연도 말 기초순자산은 전년 대비 2억 3,800만원 감소한 226억 4,9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497억 4,400만원이며,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5억 7,800만원 증가한 497억 4,400만원임. 이는 국고 이전지출의 증가(1,900만원)에도 불구하고 국고수입(5억 3,600만원) 및 기타이전수익(2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조정항목의 경우 자산재평가이익 환입이 전년(100만원) 대비 감소함에 따라 1백만원 증가함.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을 합제한 금액인 기말순자산은 215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900만원이 감소함.

5.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검토내용

- 법제처는 2025년도에 “법제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고 법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한다”는 전략목표 하에 “정부입법의 체계적 관리와 법제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정부정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실용적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프로그램목표를 수립하였음.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제처는 일반회계 13개의 세부사업을 통하여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법령안 심사, 법령 해석, 법령정비, 법제지원, 국가법령정보 관리·제공, 법제교류·협력, 법령홍보 등을 추진하였음.

-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세출예산현액 457억원 3,300만원 중 448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5백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집행률은 98.0%임.
- 2025회계연도 법제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법제처는 보수(110-01)의 부족으로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에서 2억 6,7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2024회계연도 결산시에도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로부터의 이·전용이 지적되었다는 점, 자율기구 상시 운영 등에

따라 직제상 정원을 상회하는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관리하고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로부터 대상경비로의 이·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② 법제처는 생활에 밀접한 법령을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알기 쉽게 소개하는 “한눈보기 서비스”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제공함에 따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근이 어려워 서비스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한눈보기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③ 법제처는 한눈보기 시각 콘텐츠 오류제보에 대한 참여 확대를 통해 콘텐츠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류제보 방법·절차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오류제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④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에 대하여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어린이 법제관 사업은 통상 어린이법제관 선발자 3분의1 이상이 활동을 수료하지 못하고 있는바, 어린이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학 기간 중 특별프로그램 편성 등을 통해 수료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⑤ 청소년법제관 사업의 참여기관이 제한적이고 입법체험행사 참여 인원이 선발인원 대비 저조한바 현재의 사업방식이 청소년의 준법

정신 강화 및 법령에 대한 관심도·이해도 제고라는 사업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사업지원 필요성과 실제 수요가 일치하는지 등 사업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⑥ 2011년부터 16년간 진행된 남북법제 연구용역 결과 남북법제 통합 방안 측면에서 사실상 전(全) 분야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향후에는 급격한 국내·외 환경 변화와 이에 따라 전문화·세분화되는 법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실용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⑦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다국어 생활법령 콘텐츠는 콘텐츠의 언어별 활용실적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언어별 비중 간 격차가 발생하는 등 실수요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어별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각 국적 및 사용언어의 특성에 부합하는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콘텐츠에 대한 사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⑧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홍보는 한국법령정보원 위탁을 통해 SNS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SNS를 통한 콘텐츠 확산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탁사업의 성과지표가 SNS의 실질적 홍보효과를 측정하기 곤란한바 위탁사업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SNS라는 플랫폼의 특성과 파급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⑨ 법제처가 정부입법계획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법률안 수정계획과 관련하여, 2025년 기준 25건, 2026년 7월 기준 22건(의원입법으로 발의된 8건 포함)이 제출되지 않아 3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법률안 제출계획이 철회·연기되거나 개정내용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연도 제출계획에 전년도 제출계획의 이행정도와 미제출 법률안 철회여부를 반영하는 등 미제출 법률안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⑩ 법제처의 법령정비 과제(안)을 법령 소관부처가 불수용한 사례 중 76.2%의 사유가 “법령정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불수용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상적·포괄적인 불수용 사유 분류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법령정비 과정에서 소관부처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법령 소관부처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⑪ 입법영향분석과 관련한 법령 소관부처 대상 수요조사 결과 2024년 및 2025년에 회신 부처가 없는 등 법령 소관부처의 관심도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시 수요조사 실시, 입법영향분석의 취지와 과제선정 기준, 실제 사례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법령 소관부처의 관심도 및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⑫ 정보취약계층도 법령정보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리더·점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레이어 고도화 사업'은 사업 효과성을 모니

터링하는 모니터링단의 전체 인원 39명 중 장애인이 4명에 불과하고, 모두 시각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애유형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바, 향후 모니터링단 구성시 다양한 장애 종류를 포괄하고 장애인 참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⑬ 법제교육 내역사업에서 임차료 예산현액 3억 2,400만원 중 1억 6,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태안 법제교육원과 서울 법제교육센터 간 셔틀버스 수요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시설별로 예상되는 교육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⑭ 법제교육 내역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사업은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전액을 해외연수 용역 방식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과 달리 집행하는 한편, 임차료(210-07) 비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여비 잔액을 활용하여 차량 임차료를 집행한 바, 법제처는 향후 국외업무여비 집행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⑮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와 상설기구로 추진 중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간 사업목적 및 참여국가가 중첩되어 별도 운영 실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연도별 주제가 중복되고 그 성격이 일회적 발표·토론에 그치는 등 효과성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ALES의 기능을 CALI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법제 교류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II. 검토의견

1.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1001-1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는 법제처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수 등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237억 8,000만원 중 3억 8,900만원을 전용증액하고 예산현액 241억 6,900만원 중 24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400만원을 불용함.

【 2025회계연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비목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인건비	23,780	23,780	—	±83 389	24,169	24,105	—	64	24,948
보수 (110-01)	23,224	23,224	—	472	23,695	23,644	—	51	24,403
기타직보수 (110-02)	375	375	—	△51	324	321	—	3	354
연가보상비 (110-05)	181	181	—	△32	150	140	—	10	192

자료: 법제처

나. 총액인건비 외에서 총액인건비 내 보수(110-01)로 연례적 전용 부적정

- 2025년 보수(110-01목) 예산은 232억 2,400만원으로 전용증액 4억 7,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36억 9,500만원 중 236억 4,400만원 (99.8%)을 집행하고 5,100만원을 불용함.

□ 보수(110-01)로의 전용액 원천을 살펴보면, 법제처는 2025년 12월 5일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110-02) 및 연가보상비(110-05)에서 8,300만원을,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중 상용임금(110-03), 특근매식비(210-05) 등에서 1억 2,100만원 등 총 2억 400만원을 전용⁵⁾함.

또한, 2025년 12월 15일 법령정보제공,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법령심사지원, 법제정비, 행정법제혁신,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외국법제기관교류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들에서 일반수용비(210-01), 일반용역비(210-14) 등의 집행잔액과 무형자산(440-00) 불용액 등 2억 6,700만원을 전용하였음.

□ 그런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⁶⁾고

5) 비목별 전용권 위임현황(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p.238)

구 분	목 (25개)	자체전용대상	자체전용제외(기획예산처 협의)
100 (인건비)	110(인건비)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타 비목에서 110-02목(기타직보수), 110-03목(상용임금), 110-05목(연가보상비)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6)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pp.4.~5

- 4)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 ① 각 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및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기관은 수시직제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액인건비 증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기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 ③ 다만, 환율인상, 긴요한 대규모 인력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총액인건비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총액인건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바, 총액인건비 대상사업 2개 사업을 제외한 9개 사업에서의 전용은 위 지침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025회계연도 보수(110-01)로의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용일자	구분	전용 금액		
		세부사업명 (0000-000)	세목 (000-00)	금액
12.5.	총액인건비 대상사업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1001-100)	기타직보수 (110-02) 등	83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1011-200)	상용임금 (110-03) 등	121
		소계		204
12.15.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등	123
		법령정보제공(1031-300)	일반용역비 (210-14)	18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	일반용역비 (210-14)	1
		법령심사지원(1032-300)	상용임금 (110-03)	16
		법제정비(1032-301)	상용임금 (110-03) 등	50
		행정법제혁신(1032-302)	정책연구비 (260-02)	39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	일반연구비 (260-01)	10
		외국법제기관교류(1034-301)	일반용역비 (210-14) 등	6
		법제정책연구개발(1035-300)	정책연구비 (260-02)	4
		소계		267
	총계			471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이에 대하여, 2021년부터 인건비 불용에 대한 국회 지적에 따라 2025년 인건비 예산을 충분히 증액편성하지 못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총액인건비를 조정하였으나, 향후 예산안 편성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례적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먼저, 환율인상, 긴요한 대규모 인력수요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사업으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으로의 전용을 통해 총액인건비 규모를 증액하는 방식의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⁷⁾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시에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연례적 이·전용 지적⁸⁾에 따라, 해당 조치사항으로 총액인건비 사업으로 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으나, 2025회계연도 집행시 보수 부족으로 인한 총 전용 금액(1억원→4억 7,100만원) 및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로부터의 전용 금액(9,150만원→2억 6,700만원)도 증가하였음.

7) 법제처는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국회로부터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에서 대상사업으로의 전용이 이루어졌음을 지적받아,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조치완료 결과를 제출한 바 있음.(정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19. 4. 3.)

8)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향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로의 이·전용을 금지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조치결과] 면밀한 인력 수요 등의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총액인건비 비대상 사업에서 총액인건비 사업으로의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한편, 인건비는 직제에 따른 기준정원 등⁹⁾을 기준으로 편성되는데, 법제처는 2025년 기준 「법제처 직제」에 따른 기준정원보다 5명(2025년 1월 기준) 많은 정원을 운영하고, 평균적으로 총정원 대비 △3.5명, 기준정원 대비 1.6명의 초과현원을 유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먼저, 법제처는 상시적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¹⁰⁾에 따른 자율기구(6개월 원칙, 통상 6개월 연장가능)를 설치·운영하여 임시정원을 보유하고 있음.

【 2025년 법제처 정·현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원	직제(A)	233			234								238
	총원(B)	238	239	239	239	239	239	239	239	239	239	239	243
현원(C)		237.4	236	238.1	241.1	235.1	237.1	239.1	229.1	234.1	231.1	237.1	234.1
(C-B)		△0.6	△3	△0.9	2.1	△3.9	△1.9	0.1	△9.9	△4.9	△7.9	△1.9	△8.9
(C-A)		4.4	3	4.1	7.1	1.1	3.1	5.1	△4.9	0.1	△2.9	3.1	△3.9

자료: 법제처

9)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pp.5

- 6) 시행기관은 당해연도의 총액인건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감안하여 조직·정원 및 보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① 시행기관의 조직·정원 담당부서는 수시직제 개정이나 자율증원, 직급조정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각 기관의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주관부처는 다음연도 인건비 산정시 자율적인 정원조정 이전의 직제상 총정원(기준정원)을 대상으로 하여 인건비를 편성한다. 즉, 각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증원한 인력, 직급조정(운영정원) 및 기구 증설한 부분, 신설·조정된 수당 등의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생략)

③ (생략)

④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023년에는 규제법제혁신과(정원 5명),¹¹⁾ 2024년에는 법제개선조정과(정원 5명)를¹²⁾ 각각 1년간 운영하였고, 2025년에는 8개월간 법제혁신지원과(정원 5명)를¹³⁾, 8월 25일부터¹⁴⁾ 국정입법계획을 수립·관리하고 국회심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정입법상황실(정원 5명)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음.¹⁵⁾

이와 같이 법제처는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임시정원(2025년 기준 5명, 각각 4급 1명, 4·5급 1명, 5급 2명, 7급 1명으로 구성)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¹⁶⁾

다음으로, 법제처는 현재 총액인건비의 범위에서 재원 절감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기구(총액인건비팀) 4개를 운영하는 한편, 법제정책총괄과·경제법령해석1과의 2개 직급에 대하여 자율적인 직급상향조정을 하였음.¹⁷⁾

-
- 11) 「자율기구 규제법제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2. 12. 30. 제정, 2023. 1. 1. 시행)」에 따르면, 규제법제혁신과는 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발굴·개선, ②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수행함.
- 12) 「자율기구 법제개선조정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3. 12. 29. 제정, 2024. 1. 1. 시행)」에 따르면, 법제개선조정과는 ① 장기 미정비 과제 법령의 일괄정비 등 통합 관리, ② 불편법령 정비, ③ 행정규칙 규제정비, ④ 법령정비 프로세스 개선 등을 수행함.
- 13) 「자율기구 법제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5. 1. 1. 제정 및 시행)」에 따르면, 법제혁신지원과는 ① 입법실태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제정책 개선과제 발굴 및 지원, ② 법령정비 업무절차 효율화, ③ 중·장기 법령정비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함.
- 14) 2025년 8월, 종전에 운영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였던 훈령을 폐지하여 1년간 운영할 예정이었던 법제혁신지원과를 8월에 폐지하였음.
- 15)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5. 8. 25. 제정 및 시행)」에 따르면, 국정입법상황실은 ① 국정입법계획 수립 및 실시간 점검·관리, ② 국정입법 장애요인의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③ 국정입법의 국회심의 대응전략 및 대응체계 마련 등을 수행함.
- 16) 2026년 7월말 현재, 법제처는 자율기구 설치·운영 중 다른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발생으로 자율기구를 추가·설치하는 경우, 이전에 먼저 설치한 기구는 1개월 내에 폐지하도록 한 「2026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국정입법상황실(정원 5명, 2025년 8월 25일 ~ 2026년 8월 24일)과 더불어, 3·4급 과장급을 부서장으로 하는 국가기본법제기획과(정원 5명, 2025년 5월 6일 ~ 2026년 11월 5일)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그 밖에 기준정원에 더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인 한시정원과 별도정원에 대하여, 2025년에는 한시조직을 운영하지 않았고, 파견이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운영규모는 75명이나, 2025년에는 별도정원을 배정받아 활용하고 있지는 않았음.

-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법제처는 본래 국정과제 등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임시정원의 상시 운영 등에 따라 실제 정원이 기준정원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2026년에는 2개의 자율기구(임시정원 10명)와 함께 존속기한을 2029년 5월 5일로 하는 한시조직인 법제자문조정관(한시정원 14명, 고위공무원단 1명 및 4급이하 13명)을 운영하고 있음.

보수(110-01목)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법정 지급의무가 있는바, 인건비가 편성 대상 인원에 맞추어 적정수준으로 편성되지 않을 경우 법제처의 인건비 부족 및 총액 인건비의 전용 문제를 단기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17) 2025년에 운영된 총액인건비팀은 법령데이터혁신팀, 전시법령정비추진팀, 법령용어순화팀, 행정규칙심사정비팀 등 4개 팀으로, 법제처는 「2025년도 법제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서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인건비 차액 1,729만 2천원과 직책수행경비 1,200만원 등이며, 특근매식비 월별 집행일수 조정(△5.5%) 및 연가보상비 보상일수 조정(△0.48일)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밝히고 있음.

□ 부족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은 예산집행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재발방지가 필요할 것임.¹⁸⁾ 따라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수행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총액인건비가 편성 대상 인원에 맞추어 적정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관리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간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사업에서 대상사업으로 이·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18) 2025년에도 법령정보제공(1031-300) 사업의 일반용역비(210-04)에서 인건비(1001-100)의 보수(110-01)로 전용(12. 15. 1,800만원)으로 일반용역비 지출소요금액 부족이 발생하면서, 연쇄적인 세목조정(12. 22. 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 6백만원)이 발생한 바 있음.

2. 법령정보제공(1031-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법령정보제공(1031-300)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법령안 및 법제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법제처의 주요정책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안의 제·개정 내용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민주성을 도모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함.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법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며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론마당, 법안 만들기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운영함.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함.
-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이 총 15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1,800만원이 인건비(1001-100)로 전용되었으며, 예산현액 15억 3,400만원 중 15억 1,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법령정보제공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552	1,552	-	△18	-	1,534	1,518	-	16	1,436

나. 어플리케이션에서 한눈보기 서비스 및 만족도조사 실시 필요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이하 “한눈보기 사업”이라 함)은 법령정보제공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4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현액 4억 4,300만원 중 4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법령정보제공 내역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령정보제공	1,552	1,552	-	△18	1,534	1,518	-	16	1,436
법제 및 법령 알리기	746	746	-	△8	738	734	-	4	844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353	353	-	-	353	343	-	10	357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453	453	-	△16 6	443	441	-	2	236

자료: 법제처

□ 한눈보기 사업은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생활에 밀접한 법령을 매년 30~40개씩 선정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¹⁹⁾ 이용자에게 그림·사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연간 사업 일정을 살펴보면 4단계 절차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 별로 법령 선정(1단계), 시각콘텐츠 개발(2단계), 검토(3단계) 및 콘텐츠 확정(4단계) 절차로 이루어져 있음.

【 한눈보기 사업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상 분야 및 법령 선정	·법제처 연구원 직접 수행 및 용역을 통한 시각콘텐츠 개발	·1차 검토(법제처) ·2차 검토(전문가) ·3차 검토(소관 부처)	·콘텐츠 확정 ·대국민 서비스 제공

자료: 법제처

□ 한눈보기 사업은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국민 생활에 밀접한 법령에 대해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여 알기 쉽게 접근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령 선정 및 시각콘텐츠 개발·검토·확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만족도조사 평가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9) <https://www.law.go.kr/LSW/main.html>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일반용역비(210-14목) 600만원을 지출하여 용역업체와 계약 후 매년 11~12월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한눈보기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힘.

【 2025회계연도 한눈보기 사업 세목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목명	세목코드	예산 (본예산)	예산 (추경)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내역사업 총액		453	453	△16 6	443	441	2
	상용임금	110-03	80	80	-	80	78	2
	일반수용비	210-01	40	40	-	40	40	-
	복리후생비	210-12	1	1	-	1	1	-
	일반용역비	210-14	312	312	△16 6	302	302	-
	국내여비	220-01	2	2	-	2	2	-
	사업추진비	240-01	3	3	-	3	3	-
	고용부담금	320-09	16	16	-	16	16	-

자료: 법제처

- 그런데, 현재 PC나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시에는 한눈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한눈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 한눈보기 사업 만족도조사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행하고 있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한눈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음.

□ 현재 국민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2026년 5월 21일 기준 100만 회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있음.

□ 그럼에도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한눈보기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 법령을 알기 쉽게 소개하려는 한눈보기 사업의 효과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이며,

향후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한눈보기 서비스의 제공 및 그 만족도조사의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 한눈보기 법령 오류제보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필요

- 한눈보기 사업의 목적은 그림·사진·절차도·관계도·계산식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쉽게 법령을 소개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시 시각 콘텐츠의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다만, 근래 법령 개정이 빈번하여 시각 콘텐츠의 현행화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한눈보기 시각 콘텐츠의 하단부에는 해당 시각정보가 참고자료로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공지하고 있음.
- 그런데, 한눈보기 시각 콘텐츠는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콘텐츠의 내용이 현행법과 일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각 콘텐츠의 현행화 및 오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봄.

이에 법제처는 한눈보기 제공 법령 오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이를 통한 교정을 하고 있음.

【 2025년도 한눈보기 제공 법령 오류제보 현황 】

연번	작성일	의견 제목	콘텐츠명	처리결과	관련 법령
1	2025. 02. 14.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층수: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옥탑 등의 층수 제외 기준	오류아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2	2025. 02. 17.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건축물 위치 변경	오류아님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3	2025. 04. 01.	지하램프 상부 차량 건축면적 제외 문의	건축면적 산입 제외: 지하주차장 경사로	오류아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4	2025. 04. 14.	대수선 설명시 보에 해당하는 그림 색상을 수정요청	보 관련	교정완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5	2025. 07. 02.	적용대상이 모든 건축물 아닌가요?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는거 같아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기준	오류아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6	2025. 09. 10.	내용 모순	합병: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교정완료	「건축법 시행령」 제3조
7	2025. 11. 11.	대지의 범위: 합병 (필지의 도면 축척이 다른 경우 영상)	합병: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교정완료	「건축법 시행령」 제3조
8	2025. 11. 15.	징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오류아님	「동물보호법」 제10조

자료: 법제처

- 그런데, 2025년 1년간 한눈보기 제공 법령에 대한 오류제보 건수가 8건에 불과한바, 이는 전년도 24회에 비해서도 오류제보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8건 중 7건이 건축법령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 오류제보 내용도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 한눈보기 제공 법령에 대한 오류제보를 통해 한눈보기 시각 콘텐츠에 발생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콘텐츠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바, 한눈보기 시각 콘텐츠 자체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오류제보 참여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하여 한눈보기 시각 콘텐츠의 오류를 제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및 그 절차·방법에 대한 시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오류제보가 실제 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보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⁰⁾

20) 법제처는 매년 연말에 한눈보기 사업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심도 및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라. 어린이법제관 수료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은 전국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법제관을 모집한 후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3억 5,300만원 편성되었고, 3억 4,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내역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령정보제공	1,552	1,552	-	△18	1,534	1,518	-	16	1,436
법제 및 법령 알리기	746	746	-	△8	738	734	-	4	844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353	353	-	-	353	343	-	10	357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453	453	-	△16 6	443	441	-	2	236

- 구체적으로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경우,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에게 월별로 기본법제교육, 토론마당, 법기관 탐방, 참여심사, 독서대회, 법안 만들기, 어울림 한마당, 법령퀴즈 골든벨 등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음.

【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활동 내용 】

활동명	입법체험활동 내용
토론마당	어린이·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법 주제에 대한 찬반토론 진행
기본법제교육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기본 법 교육 및 생활법령 퀴즈 등 진행
참여심사	법제관이 되어 모의 법안을 직접 심사해 보는 활동 실시
법기관 탐방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제처 등 법 관련 기관 탐방 기회 제공
법안 만들기	모의로 일상생활 관련 주제로 법안을 직접 작성하는 활동 실시
법령퀴즈 골든벨	헌법, 입법과정 등과 관련된 법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대회 실시
독서대회	법 관련 도서를 읽고 독서감상문 제출
어울림한마당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조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 제공
한마당	한해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수 법제관 격려 및 수료 행사 진행

자료: 법제처

【 어린이법제관 월별 입법체험활동 내역 】

구분	2024년	2025년
1월	-	-
2월	제16기 한마당	제17기 한마당
3월	제17기 모집	제18기 모집
4월	기본법제교육(1차, ~5월)	기본법제교육(1차, ~5월)
5월	토론마당	토론마당
6월	-	-
7월	기본법제교육(2차, ~8월)	기본법제교육(2차, ~8월), 법기관 탐방
8월	법 기관 탐방, 참여심사	참여심사
9월	독서대회(~11월)	독서대회(~11월)
10월	법안 만들기	법안 만들기
11월	기본법제교육(3차), 법령퀴즈 골든벨	기본법제교육(3차), 어울림 한마당
12월	어울림 한마당	법령퀴즈 골든벨

자료: 법제처

- 어린이법제관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입법체험활동이나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일리지 점수를 쌓아서 해당 점수가 50점 이상을 달성해야 함.

【 어린이법제관 활동별 마일리지 점수 】

활동 구분			어린이법제관 활동	마일리지 점수
입법 체험 활동	입법체험 행사 참여		행사 참여 시	50점
	수상 시 (법령퀴즈 골든벨)		우수상 수상 시	30점
온 라 인 활동	어린이 법제관 광장	독서감상문 게시판	게시글 작성	20점
			우수상 수상 시	30점
		입법체험 활동 소감문	게시글 작성	3점(1편당)
			우수 활동 소감문으로 채택	10점(1편당)
		생활 속 법령 소개	퀴즈 문제 정답 맞힌 경우	5점
			퀴즈 문제 정답 제출했으나 맞히지 못한 경우	3점
		준법일기	게시글 작성	3점
			우수 준법일기로 채택	10점
		자기소개	게시글 작성	5점
	즐거운 토론마당	주제 토론마당	음성 파일 제출	15점
			우수 의견 채택	30점
			댓글 작성	1점
		법제 토론마당	법안 제출 시	15점
			법안 채택 시	30점
			댓글 작성	1점
	온라인 법제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 과정 이수 - 5개 과정 전부 이수 시 100점	20점

자료: 법제처

- 그런데, 어린이법제관 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은 1,300명을 선발하였으나 820명 수료하였고, 2025년은 1,300명 선발하였으나 833명 수료하는 등 어린이법제관 선발자 중 3분의 1 이상이 수료하지 못하고 있음.

【 어린이법제관 선발 및 수료 내역 】

(단위: 명)

구분	선발	수료
2024년(제17기)	1,300	820
2025년(제18기)	1,300	833
2026년(제19기)	1,300	활동 중

자료: 법제처

- 어린이법제관 사업은 법률 지식에 대한 학습과 경쟁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법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다수의 어린이법제관들이 해당 과정의 수료를 달성함으로써 법을 어렵지 않고 친근하게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향후 법제처는 학업 부담 등을 고려하여 활동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에 수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수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마. 청소년법제관 사업 실효성 재검토 필요

-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청소년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현행 법령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23년부터는 모집 대상이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²¹⁾으로도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청소년법제관은 3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추어 한 달간 전국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중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메일로 받아 20개 내외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20개 내외 기관에서 평균 300명 가량의 인원이 청소년법제관으로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음.

【 청소년법제관 참여기관 및 인원 】

(단위: 개, 명)

연도	참여기관	인원
2024	20	354
2025	19	352
2026	20	282
합계	59	988

자료: 법제처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그런데, 청소년법제관 사업 참여기관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2024년 사업에는 11개 중학교 및 6개 고등학교와 함께 3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참여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만 청소년법제관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각급 학교 및 학년도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 받고 있는 청소년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²²⁾ 및 시급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법제관 사업 참여 대상 선정시 사업지원 필요성 및 수요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청소년법제관 참여기관 내역 】

년도	참여기관 수	참여기관 내역
2024	20개 (중학교 11, 고등학교 6,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3)	서일중(서울), 오륜중(서울), 중앙중(서울), 당정중(경기), 옥빛중(경기), 반월중(경기), 서현중(경기), 푸른솔중(경기), 연제중(부산), 현대청운중(울산), 부안중(전북), 신일고(서울), 원종고(경기), 저현고(경기), 세광고(충북), 창원경일여고(경남), 전인고(강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대구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인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연도별 청소년법제관 참여기관 내역 】

년도	참여기관 수	참여기관 내역
2025	19개 (중학교 8, 고등학교 11)	동도중(서울), 선일여중(서울), 중앙중(서울), 덕계중(경기), 신탄진중(대전), 현대청운중(울산), 영동중(경북), 거창대성중(경남), 성남고(서울), 한양사대부고(서울), 경화여고(경기), 남대전고(대전), 북일고(충남), 공주고(충남), 학성고(울산), 이서고(경북), 창원경일여고(경남), 전북제일고(전북), 조도고(전남)
2026	20개 (중학교 9, 고등학교 11)	중앙중(서울), 화광중(경기), SIA세종 국제교육(경기), 신탄진중(대전), 옥산중(충북), 성지여중(경남), 장흥안양중(전남), 솔울중(강원), 철암중(강원), 세일고(인천), 박문여고(인천), 대전제일고(대전), 대전중일고(대전), 제천제일고(충북), 전북제일고(전북), 동원고(경남), 창원고(경남), 창원성민여고(경남), 민족사관고(강원), 전인고(강원)

자료: 법제처

- 한편,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청소년의 연중 입법체험 활동을 목표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2025년 모두 ①토론마당, ②법령퀴즈 골든벨, ③시상식 및 진로탐방 간담회 등 입법체험 행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 청소년법제관 행사별 참석 인원 】

년도	행사명	대면여부	참석 인원
2024	토론마당	비대면	59명
	법령퀴즈 골든벨	대면	33명
	시상식 및 진로탐방 간담회	대면	26명
	합계		118명
2025	토론마당	비대면	115명
	법령퀴즈 골든벨	비대면	42명
	시상식 및 진로탐방 간담회	대면	57명
	합계		214명

자료: 법제처

행사에 참여한 인원도 2024년에는 청소년 법제관 선발인원(354명) 중 33%인 118명, 2025년에는 선발인원(352명) 중 60.1%인 21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행사의 운영방식 역시 비대면 행사와 대면 행사를 병행하면서도, 2025년 비대면 행사 참여자의 비중이 전년 대비 높아진(50%→73.3%)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법제관 사업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현행 법령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사업지원의 필요성과 수요가 일치하는지, 그 운영방식이 효과적인지 등 사업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는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하여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계법제 지원) 외국법령, 법제동향, 법령체계 등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를 요약·번역하여 국가별·분야별로 체계화해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의 대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법령의 번역 수요를 조사하고, 연간 법령 번역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법령 외국어 번역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함.
- (남북법제 연구)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한 법제정보 방안을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닦고, 통일에 대비한 분야별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혼란을 방지함.
-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에 총 16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인건비(1001-100)로 100만원 전용되었으며, 예산현액 16억 8,100만원 중 16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4,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682	1,682	-	△1	-	1,681	1,640	-	41	1,616

나. 남북법제 연구방향 재정립 및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필요

- 남북법제 연구 사업은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 1억 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내역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1,682	1,682	-	△1	1,681	1,640	-	41	1,616
세계법제 지원	1,571	1,571	-	△1	1,570	1,535	-	35	1,500
남북법제 연구	111	111	-	-	111	105	-	6	116

자료: 법제처

- 동 내역사업 중 남북법제 연구용역은 매년 정책연구비(260-02목) 예산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정책연구비 예산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3,6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5회계연도 남북법제 연구 사업 세목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목명	세목코드	예산 (본예산)	예산 (추경)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내역사업 총액		111	111	—	111	105	6
상용임금	110-03	38	38	—	38	37	1
일반수용비	210-01	9	9	—	9	9	—
임차료	210-07	2	2	—	2	2	—
복리후생비	210-12	1	1	—	1	1	—
국내여비	220-01	5	5	—	5	5	—
사업추진비	240-01	8	8	—	8	7	1
정책연구비	260-02	40	40	—	40	36	4
고용부담금	320-09	7	7	—	7	7	—

자료: 법제처

- 남북법제 연구는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매년 연구주제가 선정된 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²³⁾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

법제처에 따르면, 남북법제 연구용역 과제는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과거의 연구 내역과 통일정책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년도 연구주제를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음.²⁴⁾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 ⑨ (생략)

24)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법제처훈령 제360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연도별 남북법제 연구용역 주제 】

연도	연구용역 주제
2016	남북한 외교(조약) 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재난 관리 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행정 분야(조직·인력) 법제 통합방안 연구
	북한지역 체제 전환을 위한 개혁 개방법제 구축 방향
2017	통일준비단계에서의 법제 개선방안 연구
	남북한 재정·경제·금융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산업·무역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방안 연구
2018	남북한 체육진흥 분야 단계별 법제통합 방안 연구
	남북한 사회보장 분야 단계별 법제통합 방안 연구
	통일초기 단계에서의 법제 개선방안 연구
2019	김정은 정권에서의 경제분야 법제정비 분석과 전망에 관한 연구
	북한의 입법체계 및 최근 법제동향에 관한 연구
2020	남북한 검역 협력 법제도화에 관한 연구
2021	남북 법령용어 통합의 기준과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22	행정·안전, 국토·환경, 교통·운수, 농업·수산 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분석 연구
2023	북한의 환경 법제 연구
	과학기술·지적재산권, 보건·사회복지 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분석 연구
2024	북한의 보건의료분야 법제 연구
2025	북한의 무역·금융 법제 연구
2026	한반도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제 연구

자료: 법제처

로 한다.

제2조(설치)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연구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법제 정비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외국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사례 및 국내외 관련 법제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 연구 관련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남북한 법제의 연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런데, 16년간 연구용역 시행 기간에 걸쳐 남북한의 행정, 재정·경제, 산업·무역, 체육, 사회보장 분야 및 법령용어에 대한 분석까지 남북 법제 통합 방안에 대하여 사실상 전 분야의 주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연구용역이 시행되는 16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법제의 구조와 내용, 법령용어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외 환경에 조응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²⁵⁾

특히, 최근 급격한 기술발전, 국제질서와 무역환경의 변동 등은 각 법령의 입법목적 변화, 규제대상의 확대 또는 전문화·세분화, 규제 방식의 변경 등을 가져오는바, 재정·무역, 산업·무역과 같이 포괄적·추상적 분류를 기반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법제처는 향후 남북법제 연구 주제와 방향을 선정함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활용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거시적 통합 논의보다는 남북 간 상호 이해도와 실질적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실용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방향을 재정립하고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5) 예를 들어, 발전 및 송·변전 사업을 규율하는 법은 종전에 「전기사업법」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구분되었으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율할 필요성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를 규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반도체·인공지능 등 대수요 전력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특히, 이 과정에서 법제처의 남북법제 연구와 유사한 남북 법제 및 정책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통일부 및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필요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법령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고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13억 6,200만원 중 1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362	1,362	-	-	-	1,362	1,330	-	32	1,474

나.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제고 필요

- 법제처는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별도로 생활법령 정보서비스를 운영하여,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운영 및 홍보 업무는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법령정보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법제처는 2025년 민간위탁사업비 예산 12억 9,800만원

중 12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비목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362	1,362	-	-	1,362	1,330	-	32	1,474
상용임금 (110-03)	30	30	-	-	30	28	-	2	33
일반수용비 (210-01)	10	10	-	-	10	10	-	-	10
임차료 (210-07)	6	6	-	-	6	6	-	-	6
복리후생비 (210-12)	1	1	-	-	1	1	-	-	1
국내여비 (220-01)	1	1	-	-	1	1	-	-	1
사업추진비 (240-01)	10	10	-	-	10	10	-	-	1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298	1,298	-	-	1,298	1,268	-	30	1,406
고용부담금 (320-09)	6	6	-	-	6	6	-	-	7

한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법령정보원은 국문 콘텐츠 개발예산 10억 200만원 중 9억 7,900만원, 외국어 콘텐츠 개발예산 7,000만원 중 6,800만원,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감수 예산 1억 4,000만원 중 1억 3,700만원,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 개발 4,400만원 중 4,300만원 및 생활법령정보 홍보 비용 4,200만원 중 4,100만 원을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한국법령정보원 민간위탁사업비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집행	비고
국문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1,002	979	
외국어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70	68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감수	140	137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 개발	44	43	
홍보비	42	41	
합계	1,298	1,268	

자료: 법제처

- 그 중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을 해설·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법령정보원은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인포그래픽 형식(영어·중국어 등 4개 언어), 책자 형식(12개 언어), 카드뉴스 형식(10개 언어) 등으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음.

【 외국어 생활법령 페이지 】



<https://www.easylaw.go.kr/CSM>

-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중 “책자형 콘텐츠”의 경우, 생활법령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서술형으로 풀어쓴 것으로, 현재 외국인의 국적 및 귀화와 체류자격부터 교통사고 대응, 외국인의 건강보험, 주택임대차 보호, 기초생활급여, 임금체불, 보이스피싱, 운전면허 등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국어로 번역·제공하고 있음.

【 외국어 생활법령(책자형) 】



- 이러한 외국어 생활법령(책자형) 콘텐츠의 최근 5년간 방문자는 2021년 9,189명, 2022년 1만 2,374명, 2023년 3만 1,813 수준에서 2024년 5만 4,778명, 2025년 11만 591명으로 급증하였고,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전체 방문자 대비 비중은 2021년 0.05%에서 2024년 0.18%, 2025년 0.3%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음.²⁶⁾

26) 국문·외국어 책자형, 카드뉴스형 등 모든 콘텐츠와 솔로몬의 재판 등 부가서비스 포함 전체 서비스* 방문 수 및 방문자 수

(단위: 건, 명)

	2021	2022	2023	2024	2025
방문 수	24,964,441	37,105,400	41,361,617	41,115,974	57,849,255
방문자 수	17,170,785	25,064,449	29,952,003	29,754,039	34,898,248

□ 또한, 외국어 생활법령(책자형) 콘텐츠의 방문자 수를 언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영어 콘텐츠 방문자 수는 2024년 4,267명에서 2025년 4만 3,559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배 수준, 아랍어 콘텐츠 방문자 수는 2024년 437명에서 7,323명으로 약 16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인도네시아어 등 일부 콘텐츠의 경우 급격한 증가(552명→1,777명)와 감소(1,777명→566명)를 오가고 있는데, 법제처는 이러한 방문자 급증의 원인으로 콘텐츠의 AI학습데이터 활용, 즉 웹사이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동화 봇인 AI 크롤러를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였음.²⁷⁾

【 언어별 외국어 콘텐츠(책자형) 방문자 수 】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건수)	(비중)
영어	2,605	3,904	7,970	4,267	43,559	39.4
중국어	1,046	1,639	6,403	29,022	27,664	25.0
태국어	975	939	5,637	16,012	17,007	15.4
아랍어	272	431	1,444	437	7,323	6.6
베트남어	717	982	1,391	1,058	4,478	4.0
일본어	498	933	2,272	832	3,177	2.9
우즈베크어	272	446	1,227	486	1,660	1.5
몽골어	612	594	1,259	518	1,645	1.5
방글라데시어	289	707	657	637	1,350	1.2
네팔어	245	361	635	473	1,324	1.2
인도네시아어	382	552	1,777	566	1,229	1.1
캄보디아어	1,276	886	1,141	470	175	0.2
합계	9,189	12,374	31,813	54,778	110,591	100

*정렬순서: 2025년 방문자 수 기준
자료: 법제처

27) 2025년 하반기 한국법령정보원에 대한 위탁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이러한 방문자 수의 변동성과 법제처의 분석을 살펴볼 때, 생활법령 정보 웹사이트의 방문자 집계 방식은 실제 방문자와 AI 크롤러의 접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²⁸⁾

- 한편, 2025년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인 경우가 35.2%(980,670명)를, 이어서 베트남 12.1%(337,183명), 미국 6.5%(180,230명), 태국 6.1%(169,848명), 우즈베키스탄 3.7%(102,804명) 순으로 나타났음.²⁹⁾

이를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방문자 수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개 언어와 비교해 보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12개 언어 중 방문자 비중이 가장 높은 언어는 영어·중국어·태국어·아랍어·베트남어로 나타났는데, 해당 5개 언어를 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국내 체류비율은 2025년 기준 70.1% 수준으로,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의 언어별 활용실적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용언어 비중 간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어를 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 외국인의 국내 체류비율은 16.5%인 데 반해 콘텐츠 방문비율은 39.4%로 나타났고, 아랍어는 국내 체류비율이 0.6%로 매우 낮은 수준인

28) AI 크롤링을 통한 콘텐츠 활용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방문자 수와는 별도의 통계로 집계되어야 할 것임.

29) 법무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장단기 체류외국인 현황

데 반해 콘텐츠 방문자의 비중은 6.6%로 나타나, 국내 체류자 비율이 12.1%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콘텐츠(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25년 방문비율 상위 5개 언어 국내 체류비율 비교 】

(단위: 명, %)

구분	방문비율		체류비율		비고(공용어 기준)
	(명)	(비중)	(명)	(비중)	
영어	43,559	39.4	459,751	16.5	미국 · 영국 · 캐나다 등
중국어	27,664	25.0	1,009,581	36.3	중국 · 대만 등
태국어	17,007	15.4	169,848	6.1	태국 등
아랍어	7,323	6.6	15,784	0.6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베트남어	4,478	4.0	337,183	12.1	베트남 등
소계	100,031	90.0	1,963,604	70.1	
합계	110,591	100.0	2,783,247	100.0	

주) 체류자 소계의 경우 5개 언어 합계에서 중복[영어 · 중국어 28,138명, 영어 · 아랍어 405명]을 제외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① 외국어 콘텐츠 방문비율: 법제처

② 외국인 국내 체류비율: 법무부 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③ 공용어 사용기준: 외교부 세계국가 편람(2019) 및 각국 정부 · 대사관 포털

□ 이를 통해 파악하였을 때, ① AI 크롤링 등의 사유로 방문자 통계 측정에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② 통계가 신뢰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외국어 콘텐츠의 수요자인 체류외국인의 접근성 측면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활용도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법률조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복잡한 경우 생활법률 정보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국인과 달리, 국내체류 외국인이 생활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현재의 검색환경에서 법령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법률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국의 대사관·영사관, 법무부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 외국인 체류자를 위한 종합안내가 가능한 기관³⁰⁾으로의 접근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됨.³¹⁾

다만,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2026년 12월 구축 완료 예정)에서는 현재보다 시인성 높은 UI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제처는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운영 시

① 보다 정확한 생활법령 콘텐츠 활용 통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언어별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체류인원 대비 상대적으로 활용실적이 낮은 콘텐츠의 경우 각 국적 및 사용언어의 특성에 부합하는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② 향후 외국어 생활법령에 대한 맞춤형 검색플랫폼 및 의미 기반 검색기능 도입 등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30)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로 20개 언어(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로 전화상담서비스 제공

31) 그 밖에 각 기관에서도 전문 분야의 생활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경찰청에서는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교통사고 대응, 운전면허,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가이드를 영어·중국어 등 14개 언어로 제작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포털에서 다국어 외국인자료를 제공하고 있음(현재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해당 페이지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중).

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위탁사업 성과지표 개선 및 실효적
홍보방안 마련

- 법제처는 온라인 매체 및 생활법령정보와 연계된 이벤트를 통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홍보하고자 함. 이에 따라 홍보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수립한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홍보를 위한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부 홍보계획(안) 】

구 분		내 용		주요내용
온라인 홍보	온라인 매체 활용	생활법령 100문100답 - 네이버 지식iN 연계		생활법령 사례형 콘텐츠를 지식iN 카테고리화 연결
		생활법령 / 외국어 생활법령 홍보배너 등록		정부기관 등 홈페이지 홍보배너 등록
	SNS 활용	생활법령 블로그 운영		생활법령 카드뉴스 등 법령정보 제공, 이벤트 홍보
		생활법령 인스타그램 운영 (팔로우 이벤트)		
		SNS 활용 바이럴 마케팅		facebook, 카페 등을 통한 이벤트 홍보
	이벤트	솔로몬의 재판	투표 이벤트(24회)	판례를 사례형식으로 가공하여 투표 진행
			추천 이벤트(1회)	일상생활에 도움된 평결 추천
		우수 이용후기 이벤트		이용후기 중 우수사례 경품제공 및 공개
		생활법령 / 외국어 생활법령 퀴즈 이벤트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법령정보 퀴즈 이벤트 실시
		모바일 앱 이벤트		SMART 생활법률 어플리케이션 활용 이벤트
오프라인 홍보		외국어 생활법령 오프라인 설문조사		외국어 생활법령 설문조사
		외국어 생활법령 홈페이지 활용 교육		외국인 수요 관련 기관 실무담당자 교육
홍보물 제작		생활법령 리플릿 제작 및 배포		리플릿·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배포
		생활법령 기념품 제작		
이용자 설문조사(2회)				

자료: 법제처

생활법령 홈페이지를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으로 홍보하면서, 정부·공공 기관 홈페이지에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홍보배너를 등록하거나 블로그·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고 있음.

또한, 정기적으로 “솔로몬의 재판” 투표, “생활법령 퀴즈 이벤트” 등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여 생활법령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그 밖에도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홍보계획을 살펴보면, 한국법령정보원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법령정보원은 SNS를 활용하여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생활법령 콘텐츠를 홍보하는 한편,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각종 이벤트도 SNS를 통해 안내하고 있음. 그러므로 SNS 자체의 인지도 제고가 생활법령정보 홍보의 효과성 확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스타그램을 통한 외국어 생활법령 퀴즈 이벤트 홍보 】

외국어 생활법령 퀴즈 이벤트
Easy Legal Information Service Quiz Event

Quiz

외국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장의 화면에 내용을 집약하여 시각적으로 구성한 인포그래픽 콘텐츠가 올해부터 새롭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구제, 외국인근로자 취업 등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영어, 중국어, □□□□, 태국어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Starting this year, a new type of INFOGRAPHIC content has been introduced to help foreigners better understand important topics by presenting everything visually on a single image. These INFOGRAPHICS cover practical subjects like overdue wages and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nd are available in English, Chinese, (), and Thai.

빈칸에 들어갈 언어는 무엇일까요?
Which language goes in the blank?

* 국어, 영어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 Both Korean and English answers are accepted.

이벤트 기간 2025. 7. 29 - 8. 9
Event Period

당첨자 발표 2025. 8. 12 예정
Announcement of Winners

경품 안내 애플망고빙수 와추원 셰이크 (Regular)
Prizes

15명 15명

※ 경품은 협력업체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ize may change depending on vendors' circumstances.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LI 한국법령정보원

easylaw.go.kr · 팔로우

★프로필 링크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해주세요★

newbrain_72 49주
참여완료 ♥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과 법률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제공되는 인포그래픽 서비스가 정말 유익하네요! 올해 새롭게 시작된 만큼 많은 분들이 도움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하시길 응원합니다. #생활정보 #인포그래픽 #다국어지원 @foryouoje @xraych_08 ♥

좋아요 1개 댓글 달기

giin_via 49주
참여완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굉장히 핫하니 파워 냉방으로 틀어 (처음 에어컨을 켜면 온도를 낮추고 강풍으로 빠르게 냉

♡ 196 💬 133 📌

2025년 7월 29일

좋아요 또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 그런데, 생활법령 인스타그램의 경우 2024년 3월 개설 이후 팔로워 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팔로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팔로워 수가 2024년 7월말 1,997명, 2025년 7월말 3,974명에서 2026년 7월말 기준 4,839명인 것으로 나타나, 법제처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약 3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법제처는 인스타그램과 함께 생활법령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각 방문자 수와 게시물 수만을 확인할 수 있고 좋아요·공유·저장 등 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의 연쇄적 재확산이 가능한 SNS 플랫폼의 특성에 부합하는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홍보 SNS 방문실적 】

(단위: 명, 건)

구분		2023	2024	2025
블로그	방문자 수	50,748	42,162	46,412
	게시글 수	206	164	256
페이스북	게시글 수	25	18	62
인스타	팔로워 수	—	1,997(7월 기준)	3,974(7월 기준)
	게시글 수	—	89	95

주)인스타그램의 경우 2024년 3월 20일 개설하였음
자료: 법제처

- 그러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운영 수탁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에 대한 법제처의 위탁사업 수행 성과 점검 결과³²⁾를 살펴보면, 한국법령정보원은 상반기·하반기 모두 총점 100점 중 95점을 획득하여 위탁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점검항목 중 홍보성과와 관련된 품질관리지원(30점) 항목에서도

- ①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이용 활성화 노력³³⁾ 및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방문자 수 등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통해 배점의 83.3%인 25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SNS 운영의 제한적인 파급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32) 점검항목은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개발 실적(45점), 업데이트 관리(20점), 부가서비스(5점), 품질관리지원(30점)으로 구분됨.

33) ① 수요조사 등 국민의견 수렴 여부, ②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여부, ③ 유관기관 협업 실적, ④ 방문자 수 제고를 위한 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다만, 법제처는 2025년 하반기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법령정보 방문 경로를 조사한 결과, 조사인원 중 “SNS를 통한 접속”이 전체 응답의 32.5%³⁴⁾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히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활법령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홍보 및 생활법령 콘텐츠 제공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신규유입과 이용자를 확대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의 성과지표에 SNS를 통한 신규 유입자 확대 효과를 포함 하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SNS 운영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활법령정보를 SNS 맞춤형으로 새롭게 가공하고, 댓글·공유·해시태그 이벤트와 같이 이용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매개로 한 콘텐츠 재확산에 초점을 맞춘 홍보를 확대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4) SNS를 통한 접속(32.5%), 포털 사이트 검색(25.5%), URL을 통한 직접 접속(19.5%), 다른 기관 홈페이지의 배너(14.1%), 기타 의견

5. 법령심사지원(1032-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법령심사지원(1032-300)은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내역사업이 있음.

-(법령심사지원) 정책추진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공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법령입법지원)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안을 입안할 때부터 정책을 조문화하고, 법리적 쟁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2025회계연도 법령심사지원 내역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령심사지원	311	311	-	△16	295	286	-	9	296
법령심사지원	160	160	-	-	160	157	-	3	150
법령입법지원	151	151	-	△16	135	129	-	6	146

자료: 법제처

□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에 3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1,600만원을 감액전용하여 예산현액 2억 9,500만원 중 2억 8,600만원을 진행하고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미제출 법률안 지속적 점검 등 전년도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실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인 법령심사지원 사업을 통해 작성하는 정부입법계획³⁵⁾은 정부가 제출할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추진의 우선순위 및 시기 등을 조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임.

「국회법」 제5조의3³⁶⁾은 이러한 정부입법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총괄·조정³⁷⁾하는 법제처장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처입법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³⁸⁾

【 정부입법계획 수립 절차 】



자료: 법제처

35) 법령심사지원 2023년도 집행내역(총 8,730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1,020만원, 법제업무편람 인쇄 1,490만원, 정부입법계획 인쇄 270만원,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3,400만원,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2,550만원

36) 「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①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7)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총괄·조정한다.

38) 정부입법계획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① 법제처장이 10월 31일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에 다음년도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하고,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장이 ‘부처입법계획’을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며, ③ 이를 제출받은 법제처장은 각 부처입법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④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정부입법계획은 관보에 게재하고 「국회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게 됨.

□ 한편, 「국회법」 제5조의3제2항은 정부가 정부입법계획을 변경한 경우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는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입법의 추진을 철회하거나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입법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³⁹⁾

이에 따라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의 형태로 제출하고 있는데, 매년 1월 31일까지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이하 “당초계획”)을, 매년 9월말경 정부입법계획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이하 “수정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월 23일에 당초계획⁴⁰⁾을, 9월 25일에 수정계획⁴¹⁾을 제출하였음.

□ 그런데, 최근 5년간 당초계획 대비 수정계획의 수정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41.0%, 2022년 72.7%, 2023년 65.7%, 2024년 165.3%, 2025년 63.9% 등 통상 당초계획의 절반 이상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39)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수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 요청을 받은 정부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0) 2025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정부, ZZ22040)

41) 2025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정부, ZZ22090)

나타나, 매년 1월에 제출된 당초계획만으로는 해당 연도의 정부입법의 추진현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임.

【 최근 5년간 당초계획 대비 수정 현황 】

(단위: 건, %)

연도	당초계획 (A)	수정건수 (B+C)			수정비율 [(B+C)/ A]		
			추가(B)	철회(C)		추가 [B/A]	철회 [C/A]
2021	210건	86건	45건	41건	41.0%	21.4%	19.5%
2022	165건	120건	75건	45건	72.7%	45.5%	27.3%
2023	210건	138건	93건	45건	65.7%	44.3%	21.4%
2024	150건	248건	241건	7건	165.3%	160.7%	4.7%
2025	155건	99건	35건	64건	63.9%	22.6%	41.3%

주) 2024년도의 경우 제21대국회 임기만료('24. 5. 29.)로 인한 자동폐기 정부제출 법률안 재추진을 위해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2024. 6. 14. 국회에 통지함
자료: 법제처

□ 「국회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모두 법률안 제출계획의 수정가능성을 전제하고, 사실상 전년도에 수립하게 되는 정부입법 계획이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것임.

그러나 정기국회 중 제출되는 수정된 정부입법계획과 관련하여, ①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한 이후 추가된 법률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② 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제출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최근 5년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의 국회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정계획을 기준으로 2021년 62.6%, 2022년 68.7%, 2023년 77.5%, 2024년 69.3%, 2025년 80.2%의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어, 통상 60%에서 80% 사이의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수정계획을 기준으로 한 이행률은 당초계획보다 14%p(2021년)에서 33.7%p(2025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정계획은 9월말경 제출되어 사실상 1년 중 3개월(10월에서 12월까지) 간의 정부안 제출계획을 의미하는바, 입법계획 수정사항이 모두 정부입법계획에 반영되었다면 수정계획에 반영된 법률안은 당해연도 중 또는 최소한 다음연도 상반기 중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정부입법계획 법안 중 국회제출 현황 】

구분	당초제출계획 기준			수정제출계획 기준		
	계획	제출	비율	계획	제출	비율
2021	210건	102건	48.6%	214건	134건	62.6%
2022	165건	77건	46.7%	195건	134건	68.7%
2023	210건	110건	52.4%	258건	200건	77.5%
2024	150건	67건	44.7%	384건	266건	69.3%
2025	155건	72건	46.5%	126건	101건	80.2%

자료: 법제처

- 그러나 수정계획을 기준으로 제출예정이었던 정부안 126건 중 2025년 12월말까지 25건이 미제출되었고, 미제출된 25건 중 22건의 경우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⁴²⁾

특히, 미제출된 법안 중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은 2025년 1월 당초계획 제출 당시에는 계획되지 않았으나, 입법계획 변경에 따라 2025년 9월 25일 수정계획 제출 당시 추가된 법률안임에도,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제출되지 않았음.

【 2025년 정부입법계획(수정계획) 기준 미제출 개정안 현황 】

법률명	제출일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9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9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두번째)	9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첫번째)	8월
수산업협동조합법(두번째)	10월
(가칭) 예방접종관리법	12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월
어업자원보호법 폐지법률안	6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가칭)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1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자료: 법률안 수정제출계획

42)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가제출되었음.

다만, 법제처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미제출된 22건 중 「승강기 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의원 발의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수정계획 제출 당시 입법추진 여부가 불명확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제출하였거나, 수정계획 제출(9월말) 이후 해당 연도 12월말까지의 3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소관기관의 법률안 제출계획이 철회 또는 연기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국회에 보고한 당초·수정계획상 개정내용과 실제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경우, 2025년 제출계획에는 “사육제한·폐쇄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근거, 특송업자 검역물 통보절차 등 위임규정 마련”을 개정내용으로 보고하였으나,

2026년 제출계획에서 “농장 종업원 및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방역기준 준수 관리 강화, 계열화사업자 이동제한 및 이동중지 명령근거 명확화”로 내용을 변경하여 보고하고 2026년 2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후 이를 2025년 당초·수정계획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출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법」 제5조의3에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입법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법안심사의 충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나, 매년 당초계획의 절반 이상이 수정되고, 수정계획 제출 이후 정부입법계획의 철회·연기, 개정내용 수정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법안심사과정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입법계획은 연도별로 구분제출되어, 수정계획(9월말)과 다음연도 법률안 제출계획의 제출시점 간 차이가 4개월에 불과함에도 수정계획에 새로이 포함된 정부안이 연도내에 제출되었는지, 제출계획을 유지하여 다음연도에 제출할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함.

- 그러므로 다음 연도 정부입법계획 제출시 전년도 수정계획 대비 제출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정계획 제출당시 철회여부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추진여부가 변경된 법률안의 경우 철회여부를 포함한 향후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미제출 법률안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포함한 전년도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관리를 통해 법률안 제출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법제정비(1032-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법제정비(1032-301)는 법제처가 법령의 품질제고 및 문제점 개선, 국민의 법령이해도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령정비)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계각층의 법제도 개선의견을 수집·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 및 국민 불편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하는 한편, 미래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혁신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제적 법제를 지원함.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과 조화되도록 하며, 자치법규 입안·해석 및 정비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함.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및 문장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
- 법제정비는 2025년 법제정비 예산 11억 8,4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액전용하고 예산현액 11억 3,400만원 중 11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법제정비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184	1,184	-	△50	-	1,134	1,112	-	22	1,145

나. 법령정비 과제 관련 법령 소관부처의 수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법제정비 사업 중 법령정비 내역사업은 각계각층의 법제도 개선 의견을 수집·연구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국민 불편법령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 4억 6,700만원 중 2,100만원을 감액전용한 예산현액 4억 4,600만원 중 4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음.⁴³⁾

【 2025회계연도 법제정비 내역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제정비	1,184	1,184	-	△50	1,134	1,112	-	22	1,145
법령정비	467	467	-	△21	446	444	-	2	394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274	274	-	△1	273	259	-	15	332
알기 쉬운 법제 구축	443	443	-	△28	415	409	-	5	419

자료: 법제처

43) 법령정비연구원 및 지원인력 인건비 1억 1,400만원,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비 4,900만원, 법령정비 사례집 발간비 1,200만원, 현장간담회 운영 600만원, 법령정비 과제 발굴 회의 등 2,700만원, 연구용역비 9,300만원, 미래신기술 도입을 위한 법제혁신 연구 6,800만원,

□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법제정비 업무를 수행⁴⁴⁾하고 있는데, 법제처의 법령 심사·해석 등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대상을 발굴하거나, 법령정비 과제 발굴을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현장간담회⁴⁵⁾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⁴⁶⁾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 정비대상에 해당하는 법령을 발굴하고 있음.

【 2025년 현장간담회 실시현황 및 개선의견 】

일자	주제	참석인원	개선의견
2025. 3. 6.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법제처장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15명	관광진흥법상 보증보험 관련 규정 강화 등
2025. 9. 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법제처장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등 15명	탄소중립기본법 상 지방정부 참여 확대 등
2025. 11. 21.	K-푸드 세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법제처장 한식진흥원 이사장 등 10명	전통 한식의 원형 보존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자료: 법제처

44) 「법제업무 운영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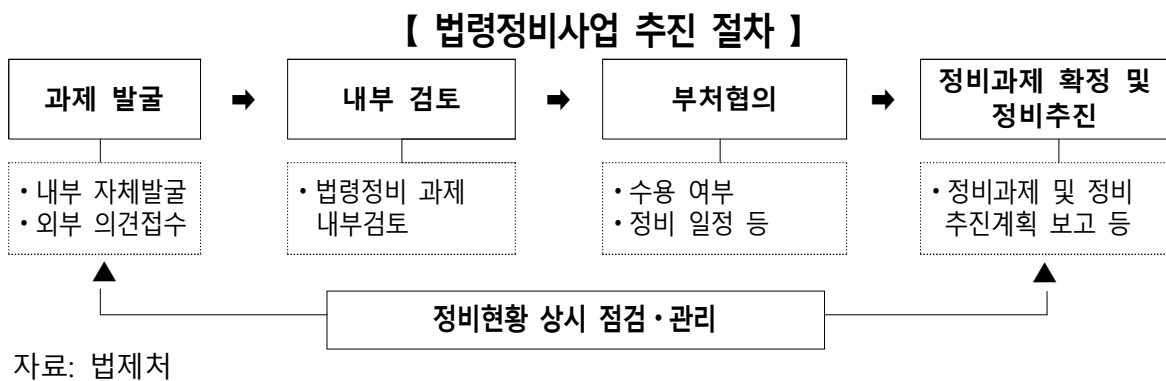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의3.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 ⑧ (생략)

45) 2021년 4회, 2022년 4회, 2023년 4회, 2024년 8회, 2025년 3회 실시하였음.

46) 매년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저출산·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된 정비과제의 경우, 정비과제(안)에 대한 법제처 내부검토와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법령 소관부처는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이를 통보 받은 법제처는 정비계획에 따라 소관 부처의 법령정비가 이루어지는지 상시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런데, 법제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굴된 법제정비 과제 중 부처협의 단계에서 소관부처에서 수용하지 아니하여 정비 대상으로 확정되지 못한 과제가 전체 3,517건의 31.2%인 1,09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제정비 과제에 대한 소관부처의 불수용 비율은 2021년 21.3%에서 2023년 48.0%로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가, 최근 2년간은 30%를 전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법령정비 과제 소관부처 수용여부 】

(단위: 건, %)

연도	정비과제(A)			비율(B/A)
		확정 과제	부처 불수용과제(B)	
2021	751	591	160	21.3%
2022	711	528	183	25.7%
2023	818	425	393	48.0%
2024	798	568	230	28.8%
2025	439	309	130	29.6%
합계	3,517	2,421	1,096	31.2%

주) 확정과제: 정비과제 중 부처가 수용(일부수용 또는 수정수용 포함)한 과제
자료: 법제처

- 법령 소관부처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여 법제처가 검토하여 통보한 법령정비 추진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최근 5년간 불수용 건수 중 76.2%인 835건이 소관부처에서 법령정비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였고, 도입취지 및 법 집행상 곤란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22.4%인 245건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법령정비 과제 불수용 사유 】

(단위: 건, %)

연도	법령정비 필요성 저조	법 집행상 곤란		법 해석상 차이	합계
		도입취지 위배	현행유지 필요		
2021	91	31	38	—	160
2022	122	27	32	2	183
2023	353	17	18	5	393
2024	171	22	33	4	230
2025	98	2	25	5	130
합계	835	99	146	16	1,096

자료: 법제처

2025년 중 불수용 과제를 살펴보면, 130건 중 40.1%에 해당하는 53건이
 현행 법령상 영업에 필요한 부담금·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소관부처에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용하지 않음.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완화와 관련된 정비의견은
 법 집행상 곤란을 이유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수수료 납부에 관한
 기준 명확화에 대한 정비의견은 법령 해석상 이견을 사유로 수용하지
 아니하였음.⁴⁷⁾

【 2025년 불수용 과제(예시) 】

정비과제	소관부처	주요내용	불수용 사유
사용료 등 분할납부 확대 (53건)	국토교통부 등	현행 법령상 영업에 필요한 부담금, 사용료 등의 납부의무를 규정하면서 분할납부 근거를 두지 않은 경우 정비	개정 불필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완화(2건)	국토교통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이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 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층간소음 규제 범위에 동물의 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법 집행상 곤란
인·허가 의제 관련(2건)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인·허가 의제 관련, 주된 인허가 신청 시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수수료도 납부해야 하는지 불분명 하므로 명확히 할 필요	법 해석상 이견

주) 사용료 등 분할납부 확대 과제의 경우 전체 과제(74건) 중 21건은 수용함
 자료: 법제처

47) 이를 소관부처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불수용한 건수는 국토교통부가 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통상부(96건), 보건복지부(86건), 농림축산식품부(81건) 순으로 나타났다.

- 법제처가 법령 심사·해석,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법제정비 과제의 경우에도 실제 법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바, 제도상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비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임.

그러나 2025년 기준 130건의 불수용 건 중 98건이 소관부처에서 법령정비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로, 법령정비 소관부처인 법제처와 법령 소관부처 간 법령정비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령정비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① 실제로는 현행법에 정비사항이 이미 반영되어 정비가 불필요하거나, ② 집행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령정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③ 법령 정비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비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 중 “정비가 불필요한 경우”는 불수용 사유 중 “법 해석상 차이”로도 분류될 수 있고, “집행부처의 정책적 판단” 역시 “법 집행상 곤란” 으로도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현재의 불수용 사유 구분으로는 법령 소관부처의 주요 불수용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법제처는 정비과제(안)에 대한 법령 소관부처의 불수용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의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의 불수용 근거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 저조”와 같은 추상적·포괄적 분류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법령정비를 수용한 부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거나, 법령 소관부처에서 실제 정비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제·개정안 입안,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법령 소관부처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 법령 정비과제에 대한 부처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⁸⁾

48) 참고로, 소관부처에서 정비과제를 수용하여 정비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2021년 이후 법령정비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2025년말 기준 별도 사유 없이 정비되지 아니한 법률안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임. 법제처는 이에 대하여, 법령 소관부처에서 제출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령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미정비과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정비를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1 ~ 2025년도 법령정비 과제 추진실적 】

(단위: 건, %)

연도	정비과제	추진	미추진	개정시기 미도래	
				(중장기)	(개정소요 발생시)
2021년	591	455	136	68	33
2022년	528	349	179	51	51
2023년	425	279	146	50	24
2024년	568	433	135	34	31
2025년	309	193	116	33	24

자료: 법제처

7. 행정법제 혁신(1032-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행정법제 혁신(1032-302) 사업은 행정작용 전반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개별법령 정비·분석에 관한 연구와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에 4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3,900만원이 감액전용되어 예산현액 4억 4,700만원 중 4억 4,6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행정법제 혁신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486	486	-	△39	-	447	446	-	1	303

나.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법령 소관부처의 참여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입법영향분석 내역사업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이하 “입법영향 분석”)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 2억 9,000만원 중 2,800

만원을 감액전용한 예산현액 2억 6,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49)

【 2025년도 행정법제 혁신 내역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행정법제 혁신	486	486	-	△39	447	446	-	1	303
행정법제 혁신 관련 연구용역	120	120	-	△11	109	109	-	-	-
입법영향분석	290	290	-	△28	262	262	-	-	227
국가행정법제 위원회 운영 등	76	76	-	-	76	75	-	1	76

자료: 법제처

49) 「행정기본법」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① (생략)

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①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2.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3.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분석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현행 법령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が必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입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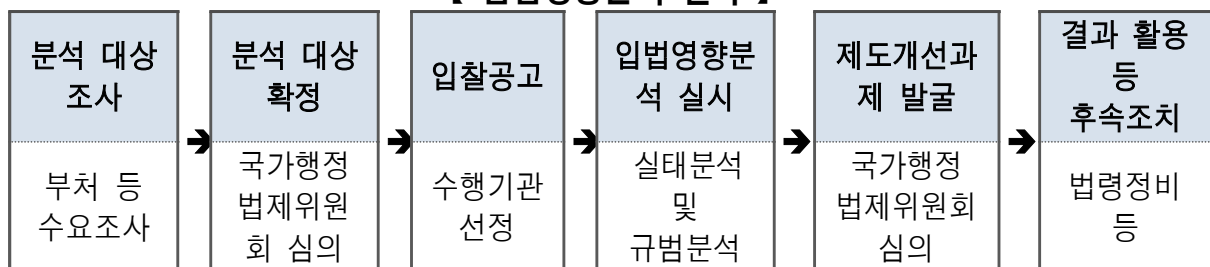
⑥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법제처장은 제6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그 조사·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부처 수요조사 등을 통해 분석이 필요한 대상을 조사하여, 국가행정법제위원회⁵⁰⁾의 심의를 거쳐 분석대상을 확정하게 됨. 이 때 분석대상은 ① 범정부적으로 대국민 영향력이 큰 법령이거나, ② 현행 다수 법령에 도입되어 있는 공통제도로서, 시행 이후 2~3년이 지난 법령⁵¹⁾임.

분석대상이 결정되면, 입찰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실시⁵²⁾하며, 분석에 따라 도출된 법령 정비사항은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됨.

【 입법영향분석 절차 】



50)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개선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1) 입법영향분석 분석대상

- | |
|--|
| ① (현행 법령) 특정 법령이나 그 법령상 제도 중 범정부적으로 대국민 영향력이 크거나, 행정 법제도 개선 차원에서 분석이 필요한 과제
② (공통 제도) 현행 다수 법령에 도입되어 있거나 「행정기본법」에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 |
|--|

52) 1건당 정책연구비(260-02) 평균 9,600만원의 금액이 집행됨.

- 그런데, 최근 5년간 입법영향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부처 수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법제처는 입법영향분석 연간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행 전년도에 한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연 2회의 수요조사가 실시되었음.

이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제도 도입 첫해인 2022년 과제에는 4건, 2023년 과제에는 3건의 수요가 회신되었으나, 2024년과 2025년 과제 선정시에는 수요조사에 회신한 부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령 소관부처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입법영향분석 수요조사 결과 】

연도	부처 수요조사	수요조사 결과		분석 건수
		회신	최종 선정여부	
2022년 과제	2021. 9. 28. ~ 10. 15.	4건	1건	2건
2023년 과제	2022. 3. 14. ~ 3. 25., 2022. 3. 31. ~ 4. 14., 2022. 9. 30. ~ 10. 14.	3건	1건	3건
2024년 과제	2023. 4. 11. ~ 4. 28., 2023. 9. 14. ~ 9. 27., 2023.10. 5. ~ 10. 13.	—	—	3건
2025년 과제	2024. 4. 17. ~ 5. 3., 2024. 9. 4. ~ 9. 20.	—	—	3건
2026년 과제	2025. 5. 15. ~ 5. 30.	1건	1건	3건

자료: 법제처

- 또한, 입법영향분석 수요조사에 회신한 부처가 있었던 2022년과 2023년 과제의 경우에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는 2022년이 4건 중 1건, 2023년이 3건 중 1건으로,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법령

소관부처의 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도 법령 소관부처가 원하는 과제가 입법영향분석 분석대상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기준에 대하여,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① 입법의 중요성 및 영향력 정도, 사회적 갈등 크기와 중요성 등을 고려 하되, ② 집행실태 및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 가능한지⁵³⁾와 ③ 분석 결과를 법령정비 및 행정 법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 하고 있음.⁵⁴⁾

위 선정기준을 고려하면, 2022년 분석과제인 “민식이법”과 공공재정 부정환수 제도, 2024년의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와 같이 제도의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각 부처에서 수요조사 단계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입법영향분석의 제도적 취지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3) 객관적 분석 가능성: 집행 실태 및 영향 분석의 실행 가능성 : 중복되는 선행 연구 존재 여부 및 선행 연구와의 관계, 통계 등 정책 및 입법 관련 자료 접근성, 현황·실태조사 및 사례 조사 가능성

54) 입법영향분석 주요 내용

- ① 법령 실태 조사
 - 입법 현황, 집행 실태 조사·분석
- ②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 및 실효성 분석
 - 법령의 합헌·합법성, 법체계 정합성, 규정의 명확성 등 규범적 적정성
 - 집행(실행) 가능성, 현실 부합성 등 법령의 실효성
- ③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 효과성 : 법령이 의도한 목표 달성 여부 및 제·개정 전후 영향 비교
 - 효율성 : 법령 집행·시행에 소요된 비용 대비 효과 분석(BC 분석)
- ④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 분석
 - 헌법상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 국민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
 - 법령의 부작용·문제점이나 의도/비의도적 결과 발생 여부 및 그 정도
 - 그 밖에 사회·경제적 영향 등

□ 한편, 실제 입법영향분석 연구과제와 그에 따른 개선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 도입 첫해에 실시된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 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환수이자율 통일 및 제재부가금 규정 정비를 권고하였던 사례를 제외하면 개선권고사항 대부분이 개별법령의 정책적 개선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입법영향분석 연구과제 및 개선권고 현황 】

연도	연구과제명 (수행기관)	개선권고 대상법률	개선권고 주요내용
2022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이익 환수 시 부과되는 이자율 통일, 개별법상 제재부가금 규정 정비, 환수이자율과 가산금 중복 징수 문제 개선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실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 명확화, 시간대 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완화,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정비의 효율성 제고
2023	어린이 안전관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총괄·조정 기능 마련,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방안 마련, 응급조치 의무 시설 범위 및 의무보험 보상한도 조정 등
	위생용품 관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위생용품 관리법	총괄적 관리체계 구축 미흡, 영업자 위생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
	장애인 등록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정도 심사 이의신청 근거를 고시에서 법령으로 상향규정, 복지 지원범위 합리화를 위한 장애인 판정방식 개선 등
2024	민간자격증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자격기본법	민간자격 정의 규정 개선 등록자격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도입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도에도 일정 유형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거래계약 체결일 명확화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우수 제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품질평가 낮은 기관에 대한 컨설팅 등 실시, 제공인력 교육 훈련 내실화 필요 등

【 입법영향분석 연구과제 및 개선권고 현황 】

연도	연구과제명 (수행기관)	개선권고 대상법률	개선권고 주요내용
2025	폐교재산 활용 제도 (한국행정연구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수익계약 대상 폐교 활용 용도 확대, 폐교재산 활용 관련 주민의견 수렴 근거 신설 등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한국개발연구원)	문화예술진흥법	설치기준을 연면적 기준에서 건축물 특성(미술작품 인지율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 다수 미술작품 설치 유인 마련
	청소년 보호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청소년 보호법	일정 연령 이상 청소년 PC방 고용 허용,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의 범위 구체화 및 확대

주) 2026년의 경우 신고 제도(한국행정연구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제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법제처

-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정비 과제였던 “집행유예 선고 결격사유 명확화” 사례와 같이, 여러 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제도에 대한 정비의 경우에는 법령 간 통일성 확보 및 해석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소관부처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⁵⁵⁾
- 그러나 2025년 입법영향분석 과제에 따른 개선권고 중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기준 변경” 사례와 같이 개별법령에 규정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 소관부처의 정책적 당부에 대한 판단,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이에 법령 소관부처의 수요와 관계없이 영향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개선권고에 대한 법령 소관부처의 관심도 및 수용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것임.

55)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할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

- 그러므로 법제처는 입법영향분석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 소관부처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먼저, 동일한 법령 또는 제도에 대하여도 필요하면 연간 수차례 개정을 거치고 있는 현재의 입법과정을 고려하여, 분석 전년도뿐만 아니라 당해연도에도 분기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요조사에 앞서 입법영향분석의 취지와 필요성, 영향분석이 가능한 과제의 기준과 과거 분석 및 개선권고 사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자체에 대한 이해 및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법령에 대한 관심도는 개정 당시, 또는 사회적 문제 발생 등으로 개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이 개정되는 시점에 대상 법령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예비과제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1033-5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은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통합·구축하고, 법령안 입안·심사, 입법예고 등 법제업무와 국민참여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입법시스템을 운영·개선하는 한편,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이용한 지능형 법령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세계법 제정보서비스 및 법제교육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며, 그 밖에 법제처 정보화와 관련한 일반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으로 80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 현액 80억 4,600만원 중 77억 9,9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8,046	8,046	-	-	-	8,046	7,799	-	247	20,771

나. 모니터링단 구성의 다양화 필요

-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정부입법 지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처내 업무 행정정보화, PC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운영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법제처는 현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레이어 고도화 사업을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서비스	4,632	4,434	198
정부입법 지원	1,618	1,615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433	416	17
처내 업무 행정정보화	459	440	19
PC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운영	526	522	4
사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39	238	1

자료: 법제처

- 레이어 고도화 사업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도 법령정보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리더나 점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정보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법제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피드백을 위하여 레이어 고도화 사업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모니터링단은 연간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국가정보시스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2025년 및 2026년에는 모니터링단 39명이 간담회에 참석하였음.

【 연도별 모니터링단 간담회 개최 내역 】

연번	일 시	목 적	참석대상	집행내역	집행액 (천원)
1	2024.5.31.(금)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발대식(시각장애인 대상)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모니터링단 9명	위촉장, 현수막 제작 및 인쇄	430
				임차료	600
2	2025.12.19.(금)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임명식 및 간담회	국가법령 정보센터 모니터링단 39명	위촉장, 현수막 제작 및 인쇄, 기념품 제작	2,343
				임차료	1,320
3	2026.4.29.(수)	국가법령정보센터 UI/UX 개편(안) 관련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단 간담회		임차료	1,452

자료: 법제처

□ 그런데, 위 39명의 모니터링단 구성을 살펴보면 이 중 장애인은 4명에 불과하고, 4명의 장애인도 모두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바, 레이어 고도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다양한 장애인의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4명의 시각장애인은 모니터링단 비중에 있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모니터링단 구성 현황 】

연번	성 명	연령대	성 별	연번	성 명	연령대	성 별
1	강OO	30대	남	21	이OO	30대	남
2	권OO	30대	여	22	이OO	50대	남
3	권OO	20대	여	23	이OO	30대	여
4	김OO	40대	남	24	임OO	40대	여
5	김OO	40대	남	25	임OO	20대	여
6	김OO	20대	여	26	장OO	40대	남
7	김OO	60대	남	27	장OO	40대	남
8	김OO	30대	여	28	전OO	30대	여
9	김OO	40대	남	29	전OO	40대	남
10	김OO	20대	남	30	정OO	20대	남
11	김OO	30대	여	31	정OO	50대	남
12	김OO	40대	남	32	정OO	30대	여
13	김O*	50대	남	33	정OO	20대	여
14	박OO	20대	남	34	조OO	50대	남
15	박OO	20대	남	35	최OO	30대	여
16	손OO*	40대	여	36	최OO*	40대	여
17	유OO	50대	남	37	한OO*	30대	여
18	이OO	20대	여	38	황OO	30대	여
19	이OO	30대	여	39	황OO	40대	여
20	이OO	20대	여				

* 표시는 시각장애인을 의미함.

자료: 법제처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모니터링단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성별, 직업, 연령을 고려하여 온라인 공모를 하거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는 입장인바,

향후 법제처는 모니터링단 공개모집 시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장애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니터링단 인원 중 장애인의 참여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법제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제처 직원의 교육훈련·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역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이 있음.
- (법제교육) 공무원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설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법제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함.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전문가 초빙 등 체계적인 법제처 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연구모임 지원 등으로 자발적 연구·학습활동을 지원하며, 학회 등으로 전문가와의 지식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법제실무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함.
- (청년인턴 제도 운영)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국정 참여 및 실무경험 등 다양한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함.
-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에 총 18억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1,000만원이 인건비(1001-100)로 전용되었으며, 예산현액 17억 9,200만원 중 15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802	1,802	-	△10	-	1,792	1,584	-	208	2,742

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법제교육 사업에는 15억 3,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예산현액 15억 2,800만원 중 13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내역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802	1,802	-	△10	1,792	1,584	-	208	2,742
법제교육	1,538	1,538	-	△10	1,528	1,336	-	192	2,474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30	130	-	-	130	126	-	4	130
청년인턴 제도 운영	134	134	-	-	134	122	-	12	138

자료: 법제처

- 동 내역사업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 것은 임차료(210-07목) 예산 3억 5,4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세목조정이 있었음에도 예산현액 3억 2,400만원 중 1억 5,800만원만 집행되고 1억 6,600만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임.

【 2025회계연도 법제교육 내역사업 세목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목명	세목코드	예산 (본예산)	예산 (추경)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내역사업 총액		1,538	1,538	△10	1,528	1,336	192
상용임금	110-03	60	60	-	60	59	1
일반수용비	210-01	484	484	30	514	513	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9	39	-	39	38	1
임차료	210-07	354	354	△30	324	158	166
시설장비유지비	210-09	6	6	-	6	3	3
복리후생비	210-12	1	1	-	1	1	-
일반용역비	210-14	12	12	-	12	12	-
관리용역비	210-15	100	100	-	100	87	13
국내여비	220-01	83	83	-	83	76	7
국외업무여비	220-02	39	39	-	39	39	-
사업추진비	240-01	28	28	-	28	28	-
일반연구비	260-01	190	190	△10	180	180	-
고용부담금	320-09	12	12	-	12	12	-
공사비	420-03	100	100	-	100	100	-
자산취득비	430-01	30	30	-	30	30	-

자료: 법제처

- 위와 같은 임차료 예산의 대거 불용은 서울에서 태안 법제교육원으로 향하는 셔틀버스가 탑승자 부족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적게 운영하였던 것이 주된 이유로,

법제처에 따르면, 서울에서 출발하는 교육생들의 경우 셔틀버스 외에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따라 서울발 셔틀버스 운행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법제처는 태안 법제교육원과 서울 법제교육센터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태안 법제교육원은 숙박시설과 전산강의실을 갖추어 3~5일 과정의 법령안 편집기 실습, 교육기관 연계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서울 법제교육센터는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하루 또는 2일 과정의 강독형 강의 및 교육생의 신청에 따른 모집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처럼, 태안 법제교육원과 서울 법제교육센터는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어 각각의 교육시설 신청자가 중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시설별로 예상되는 교육신청자에 대해 사전에 임차버스 이용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임차료 예산의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법제처는 태안 법제교육원 운영에 있어 사전에 교육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 법제업무담당자 해외연수 등 법제처 국외업무여비 집행시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필요

- 법제처는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법제업무담당자를 모집하여 단기해외업무연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법제교육 내역사업에서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용도로 국외업무여비(220-02) 3,913만원 및 통역비 320만원 및 사업추진비 138만원 등 4,371만원이 편성되어, 그 중 4,368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의 경우 법제처 소속 공무원 5명을 포함한 45명 규모로 호주에서 5박 7일간, 시·도 법제업무담당자의 경우 법제처 소속 공무원 3명을 포함한 17명 규모로 미국에서 5박 7일간의 연수를 실시하였음.⁵⁶⁾

- 그런데, 해당 사업을 실시하면서 법제처는 편성된 국외업무여비(3,913만원)를 활용하여 단기 해외연수 용역을 발주하였고, 입찰공고에서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주)대상에듀에 국외업무여비 전액을 용역비의 형태로 지급하고, 일반수용비(400만원)를 통역비 용도로 지급하여 연수의 기획 및 운영 일체⁵⁷⁾를 위임하였음.

56)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개요

○ 중앙행정기관 해외연수	○ 시·도 및 교육청 해외연수
- 연수기간: 2025. 6. 15.(일) ~ 6. 21.(토), 5박 7일	- 연수기간: 2025. 6. 7.(토) ~ 6. 13.(금), 5박 7일
- 참가인원: 법제처 5명* (전체 45명)	- 참가인원: 법제처 3명* (전체 17명)
- 연수국가: 호주	- 연수국가: 미국

57) 「해외연수용역 계약특수조건」 제3조(임무) 계약업체는 법제처가 위임한 연수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연수의 안내 및 알선, 연수 중 숙박, 식사 제공, 현지교통 섭외, 연수기관 섭외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기본 자료 수집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2025회계연도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관련 집행내역 】

집행비목	내역	집행금액	수령인
국외업무여비	2025년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용역 완수에 따른 대금 지출 요청	39,100,000	주식회사 대상에듀
일반수용비	2025년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통역비 지급 보고	4,000,000	
	나라장터 조달 수수료 지출 (2025년도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용역)	20,000	조달청 징수관
사업추진비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출장 정액경비 지급	695,000	김**
		695,000	송**

자료: 법제처

□ 이러한 집행방식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한 집행이 가능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볼 것임. 그러나 먼저, 법제처는 국외업무여비로 편성된 3,913만원 중 3,910만원을 해외연수 용역 용도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운임 등 운임비 2,433만원과 일비·식비 및 숙박비 약 1,477만원으로 구성됨.

그런데,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용역기관이 차량을 임차하도록 하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별도의 차량을 임차한 경우 일비의 2분의1을 감액 지급하게 되는바, 3,913만원 중 용역계약의 기초금액으로 활용가능한 예산은 일비 감액분인 875\$, 약 13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함.

또한, 숙박비는 상한액을 한도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액지급은 상한액보다 할인된 금액(85%. 할인정액)만 가능함에도, 발주시 상한액을 기준으로 정액계산하였음.

- 법제처는 최종 정산시에는 차량 임차에 따른 일비 1/2 감액과 실제 집행한 숙박비를 기준으로 집행하고 이에 따라 정산하였다고 설명함. 실제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출장인원별로 일비를 1/2 감액하였다는 점과 실제 집행된 숙박비가 기재되어 있음.⁵⁸⁾

【 2025회계연도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항목별 집행내역 】

구분	중앙행정기관 (호주)	시·도	합계	비고
항공운임	14,074,980원	6,284,840원	20,359,820원	
일비·식비	3,151,170원	2,509,160원	5,660,330원	
숙박비	5,028,300원 (\$3,540)	4,083,710원 (\$2,875)	9,112,010원	숙박비 상한액과 동일금액

주) 숙박비 상한액

- 중앙행정기관(5인) $\$800(\$160 \times 5) + \$685(\$137 \times 5) \times 4 = \$3,540$

- 시·도(3인) $\$1,115(\$223 \times 5) + \$880(\$176 \times 5) \times 2 = \$2,875$

자료: 법제처

- 그런데, (주)대상에듀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주)대상에듀는 일비 감액 및 항공운임·숙박비 실비 정산에 따른 잔액을 정산하여 반납한 것이 아니라 발주금액 전액을 해외연수에 집행하였는데, 잔액은 주로 차량 임차(3,642,840원)에 집행되었음.

58)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체제비 등 비용 집행기준

1) 중앙행정기관 해외연수(5박 7일, 호주)

1인별 금액	체제비			
	일비	식비	숙박비	계
국장급	$\$35 \times 7 = \$245$	$\$78 \times 5(1/3) = \$416$	$\$160 \times 5 = \$800$	\$1,461
3급 이하	$\$30 \times 7 = \$210$	$\$59 \times 5(1/3) = \$315$	$\$137 \times 5 = \$685$	\$1,210

2) 시·도 및 교육청 해외연수(5박 7일, 미국)

1인별 금액	체제비			
	일비	식비	숙박비	계
국장급	$\$35 \times 7 = \$245$	$\$107 \times 5(1/3) = \$570$	$\$223 \times 5 = \$1,115$	\$1,930
3급 이하	$\$30 \times 7 = \$210$	$\$81 \times 5(1/3) = \$432$	$\$176 \times 5 = \$880$	\$1,522

이는 ①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② 공용의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⁵⁹⁾ ③ 차량 임차료는 국외업무여비(220-02)가 아닌 별도의 임차료(210-07)를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위반된 것임.

- 한편,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제안자가 원활한 연수를 위한 통역을 섭외하여 제안서에 프로필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적합한 통역 확보가 제안서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특수조건에도 통역 지원을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용역의 범위에 통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⁶⁰⁾

【 2025년도 단기해외연수 용역 제안서 목차(제안요청서 발췌) 】

I. 일반사항 부문
1. 일반 현황(기관명, 대표자, 홈페이지, 주소, 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3. 자본 현황 및 영업경력
II. 제안 프로그램 부문
1. 제안 개요
2. 연수단 세부 연수 내용(특수계약조건 참고)
3. 연수단 세부 연수 일정표
※ (붙임 1) 연수 세부일정(안)의 기관방문 일정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일정은 변경 가능
4. <u>연수단 가이드 및 통역 프로필</u>
※ 제안서 제출 당시 미확보 시에는 확보방안 제출
III. 그 밖의 제안사항 등

59) 「공무원 여비 규정」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공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60) 「해외연수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기관 방문) ① 계약업체는 세부일정표에 명시된 현지 방문기관 방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 협조요청을 구한다.

② 계약업체는 세부일정표에 명시된 현지 방문기관의 방문 일정에 따라 연수내용과 관련한 통역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도 등 해당 분야의 통역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그러나 법제처는 용역계약 금액(3,910만원)과 별도로,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통역을 위하여 편성된 일반수용비(210-01목) 320만원 및 법제교육 운영 용도로 편성된 80만원을 활용하여 별도로 400만원을 지급하였음.

- 종합하면, 법제처의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집행방식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한 여비 지급 및 정산이 곤란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른 계약범위와 실제 집행금액의 불일치로 계약내용만으로는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⁶¹⁾ 향후 여비 집행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통역으로 지원해야 한다.

61) 별론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비용은 자부담에 해당하므로 전체 연수경비(용역경비) 규모를 알기 어려움.

10. 외국법제기관교류(1034-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외국법제기관교류(1034-301)는 해외 법제기관과의 법제 분야 교류 및 협력을 실시하여 국가 간 상호 발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의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사업이 있음.
 - (외국법제기관교류) 법제처와 해외 법제기관 간 상호 방문·초청 등을 통한 법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 선진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논의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미래 법제 쟁점에 공동 대응하고, 법제 발전을 위해 상시 교류하는 다자 협력체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운영함.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법제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각국의 법제 개선사항 및 발전 전략을 도출함.
-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에 총 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6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현액 2억 3,700만원 중 2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 집행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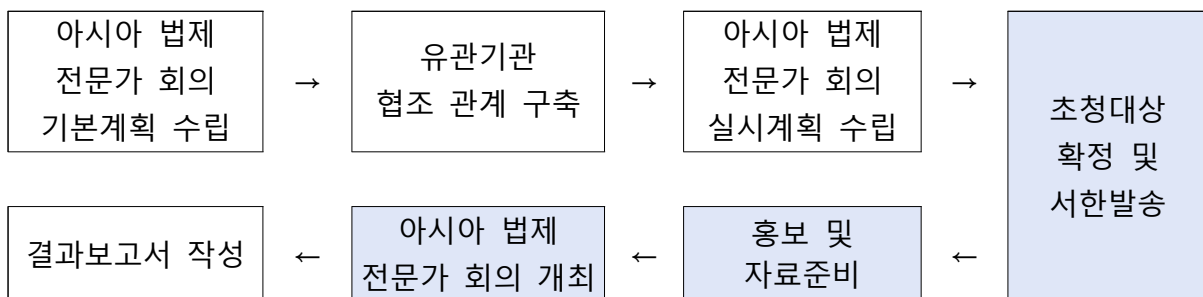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243	243	-	△6	-	237	236	-	1	430

나. 아시아 국가간 법제 교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고, 기본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조, 실시계획 수립, 초청대상 확정 및 서한발송, 홍보 및 자료준비, 회의 개최, 결과보고서 작성의 절차로 진행되며, 2025년에는 예산현액 1억 1,600만원 중 1억 1,5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사업 절차 】



자료: 법제처

【 2025회계연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 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117	117	-	△1	116	115	-	1	117
일반수용비 (210-01)	5	5	-	-	5	5	-	-	5
일반용역비 (210-14)	107	107	-	△1	106	106	-	-	107
국내여비 (220-01)	2	2	-	-	2	2	-	-	2
사업추진비 (240-01)	3	3	-	-	3	2	-	1	3

자료: 법제처

- 법제처에 따르면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의 주제 선정은 역대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참고하고, 법제 분야의 최근 동향 및 현안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밝힘.
- 그런데, 연도별 주제를 살펴보면 2022년과 2025년 모두 디지털 법제를 선정하고, 2024년의 주제인 인공지능(AI)을 2025년에도 다루는 등 연도별 주제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연도별 ALES 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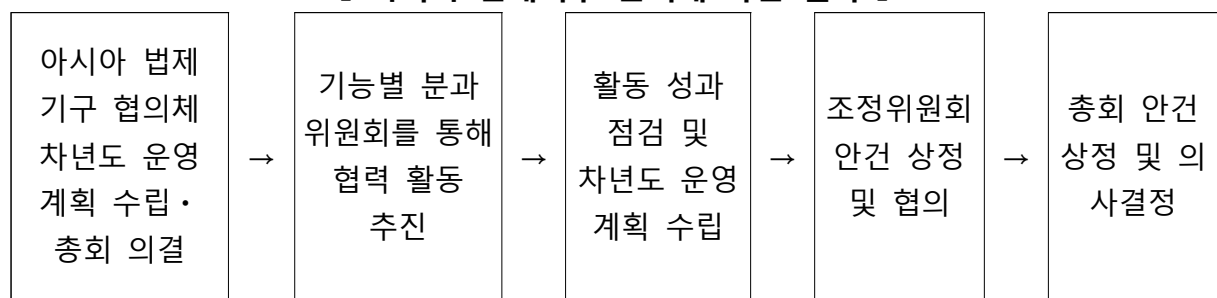
연도	주제
2022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방안
2023	법제로 하나 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협력방안
2024	AI와 법률의 만남, 아시아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2025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사회의 디지털 경제 법제 현황 및 법제 발전 방향

자료: 법제처

- 나아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는 주제에 대한 일회성 발표와 토론에 머물러 아시아 국가 법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봄.
- 이에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설립을 추진하였고, 태국·캄보디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해당 국가들과 2024년 11월 협의체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음.
- 올해부터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활동이 본격화되어 2026년 5월 20일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몽골 법무내무부, 태국 내각사무처 및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의 담당부서 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회원국의 법령 및 법제심사 체계와 입법과정에 대해 발표하였음.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는 매년 차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고 활동 성과를 점검하며, 필요 시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협의하는 등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협의체라는 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임.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사업 절차 】



- 다만, 사업 목적에 있어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참여국가 역시 태국, 캄보디아, 몽골 등으로 중첩되어 있어 2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이는바,

향후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를 상설기구로 발전시키되,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는 그 역할을 축소하고 해당 기능을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로 흡수·일원화하는 등 아시아 국가간 법제의 교류와 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 고 자 료

최근 3년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결과

○ 2022회계연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 공무직 근로자 중 행정지원인력 25명에 대해서 6단계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재직기간 6년 차 이상 근로자가 25명 중 13명임을 고려할 때 현행 호봉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호봉 급간 상승률이 1%에 불과한바, 타 부처 공무직 호봉체계 사례 등을 검토하여 공무직 근로자 호봉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 - 기간제근로자 연구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임금보전방안 마련 필요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공무직 근로자 호봉체계를 개편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최저호봉과 최고호봉 간 기본급 차이를 증가(기존 1만원 → 10만원)시키는 등 장기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체계 개편을 추진함.
○[지적사항] 20대·21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제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이 지연되거나 이견이 충분히 검토·해소되지 아니한 채 법안이 의결되어 해당 법규정을 근거로 한 실무 집행이 어렵거나 부처 간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이견 모니터링을 강화(상시)하고 조정 수요조사(분기별)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 주요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 법안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부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이견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 그 결과, '23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횟수와 협의회 상정 안건수는 모두 증가하였음 * (연도) 협의회/상정 안건: ('22년) 48회/76건 → ('23년) 96회/108건 ○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 실적 및 사업계획을 충실히 검토하여 비목별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매년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여 연례적인 예산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비목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영상자료 제작을 위한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한 후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최근 5년 동안 반복하였음. 또한 법제처는 지난해 「2021년도 법제처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지적(2022. 8. 22.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받은 이후에도,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세목조정을 동일하게 반복하였음(2022. 10. 17. 홍보콘텐츠 제작)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비목별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홍보 영상의 제작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편성 시부터 일반용역비로 반영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도 예산부터는 비목내역을 개선하여,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하는 영상제작비용을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에 편성하여 운영 중
○[지적사항] - 2022회계연도 인건비 예산 총 221억 900만원 중 2,500만원을 동일 사업 내 전용하고 207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3,800만원을 불용함 - 최근 4년간 법제처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인건비가 정원 대비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의	○ 인력수급 및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등을 통해 '22~'23년 인건비 불용액이 매년 약 10억 원씩 감소하고 있음. ※ 인건비 불용액 ('21) 2,395백만원 → ('22) 1,338백만원 → ('23) 343백만원 ○ 향후에도 합리적인 인력 운영 및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으로 인건비가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예정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향후 합리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직급 변동 및 결원 보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인건비를 편성할 것		
○[지적사항] 법령해석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해석 예상 소요기간, 추후 처리절차 등을 보다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고, 법령해석이 있는 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법원 판결로 법령해석 내용이 바뀔 경우에는 재해석 요청을 받아들이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법령해석은 법령의 집행을 통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시간과 절차에 따라 정확한 회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령해석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령해석에 관련한 소요기간, 처리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정확한 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해 조치할 것	제도개선	○ 법령해석 안건 접수 시 요청자에게 예상 소요기간,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고,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문자로 알려 법령해석 요청자가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법령해석 처리단계별로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개선함. ○ 예측 가능한 시간과 절차에 따라 신속한 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정부는 정부입법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2022년도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제출률이 46.1%로 낮고 계획 법안의 수정률 또한 116.4%로 높게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충실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주의	○ 정부입법계획의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정부입법계획 수립 시 소관 부처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법제업무평가에서 입법계획 철회 시 적용되는 감점 가중치를 확대하였음. - 또한, 소관 부처의 책임감 있는 정부입법계획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9월 이후 정부입법계획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의 시급성, 세부 입법추진 일정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음.

○ 2023회계연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법제처는 최근 3년간 신규 공무원 임용전 실무수습 근무로 인해 기타직보수가 부족하게 되어 보수(110-01목)에서 전용하여 집행함 - 매년 특정 비목을 부족하게 편성하고 부족한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부터 전용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 결과와 다르게 불필요한 예산변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적절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향후 예산편성 시 기타직보수 예산을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편성할 것	주의	○ 연례적 전용을 방지하고자, 기타직보수 예산 부족분을 미리 산출하여 '25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예정임.
○[지적사항] 국무조정실의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 이후인 2023. 1월 발표되었고, 필요한 비용은 전 부처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용이 이루어졌음 - 청년인턴 운영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발표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등에 반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예산의 전용을 통해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당시 계획되지 않은 청년인턴 채용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주의할 것	주의	○ '24년 및 '25년 예산에 청년인턴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예정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종사 제도는 타 기관과의 경쟁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 모집 계획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법제처는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시근로자로 채용하여 법률사무 경험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종사 제도 운영 - 2023년 모집 계획인원 7명 중 2명(채용률 30%) 채용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 '21년 60%, '22년 75%, '23년 30%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지속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지속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 지역적 한계로 인한 채용·관리 상 애로 및 예산집행 부진 등 운영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도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25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
○[지적사항] 현재 법령해석 업무 관련 예산이 기관운영기본경비로 편성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실적 및 예산의 효율성을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령해석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자원과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관계인으로 민원인 참여 건수 및 적극해석 건수 등 법령해석 업무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였고, - 그 결과 '24년 민원인 참여 건수와 적극해석 건수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연도) 민원인 참여/적극해석: ('23년) 50건/56건 → ('24년) 52건/57건 ○ 앞으로도 법령해석 업무에 투입된 자원과 성과를 명확히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업무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법제처는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입법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과 법률안 소관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본 협의회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분되는데, 개최건수 중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본협의회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개최에 불과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협의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국무조정실에 통보하는 절차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대한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을 본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고, 이들로 구성된 본협의회를 개최하여 7건의 이견조정을 완료함. ○ 정부입법정책협의회(본협의회)에서 미조정된 안건은 국무조정실에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
○[지적사항] 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공사를 수행하여 영상회의실을 구축하고도 회의 참석 용이성 등을 이유로 별도 임차료를 지불하고 외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영상회의실의 이용률이 저조함 - 법제처는 2023년 3월 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 조성을 완료하였는바, 동 회의실 조성에 2,180만원 집행 - 영상회의실 공사 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총 회의 개최 33건 중 22건은 영상회의실 이용(이용률 66.7%), 11건은 외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임차료 699만원 집행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영상회의실 이용률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외부회의실 임차료 집행을 최소화할 것	제도개선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영상회의실 이용률 제고하기 위해 2025년 외부회의실 이용을 축소(6회→4회)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외부회의실 임차료 예산을 감액(1,680천원)하여 편성함. ○ 앞으로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영상회의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불필요한 임차료 집행을 최소화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법제처는 콘텐츠 신규 제작 시 각 소관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두 달에 한 번 인용 법령의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오류를 신고받아 검토 후 수정하는 방식으로 현행성을 점검하고 있음 -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 생활법령의 경우 사전 안내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시행예정 법률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상시적으로 제·개정되고 있는 법령을 국민에게 ‘찾기 쉽게’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해 '25년에는 업데이트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 AI 생성형 기능을 활용하여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개정 후 시행 전 법령 안내 관련 관리시스템을 '25년 상반기 내 마련하여 주요한 시행 예정 관련 콘텐츠에 개정 후 시행 전 법령 링크를 안내하도록 하겠음.
○[지적사항] 법제처가 총괄·조정하고 있는 정부입법계획이 자주 수정되고 국회제출비율이 낮아 계획수립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5년간 계획대비 국회제출 비율이 50%임 - 다만, 계획 준수를 강조하는 경우 부처가 정부입법을 회피하거나 긴급한 입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 존재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과정의 검토를 강화하고 준수율과 유연성을 균형있게 관리할 것	제도개선	○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관리 개선 방안* 마련('24.10월) * 입법환경 대응을 위한 수정입법계획의 체계적 활용, 법률안 제출 시기의 전략적 안배, 정부입법계획 이행 관리 강화, 실적 및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 25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 기반영('24.10월) 및 25년도 법제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반영('25.4월) ○ 25년도 정부입법계획 예비검토 시 부처간 이견 등 쟁점 사항을 고려하여 준수할 수 있는 일정이 되도록 조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법제처는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개선 등 ‘용어정비’에 이어 ‘문장정비’를 주안점으로 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문장구조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될 우려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입법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예산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문장 구조 개선이 법령내용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제도개선	○ 문장 구조를 읽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정비 효과가 있음. ○ 다만 우려하고 있는 문장 구조 개선으로 인한 법령 내용 변경 가능성을 방지하고, 문장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용역 관리 및 결과물의 면밀한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용역수행 시 국어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를 공동 연구진으로 구성, 국어 문법 사항과 법률 사항을 교차 검토하도록 관리하였고, - 법제처 검토 단계에서 법령 소관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비안을 신중하게 확정하고 있음. ○ 또한, 최종 정비안 중 문장 구조의 단순 개선과 같이 경미한 정비 사례의 경우 소관 부처의 입법 수요를 고려하여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정수요 폭증 등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문장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지적사항] 2023년 법제처는 3건의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 효과성 등 입법영향분석보다는 일반적인 정책 분석에 중점을 두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입법영향분석의 취지와 체계에 맞도록 정책연구평가를 엄격히 하는 등 연구용역보고서 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 입법영향분석 수행기관에 대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등에 있어 입법영향분석의 취지와 체계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어린이법제관 수료기준이 낮아 다양한 활동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수료율이 6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된 후 일정 점수를 적립하면 수료할 수 있는데, 활동별 참여점수(10~20점)에 비해 수료기준(50점)이 낮음 - 2023년 어린이법제관 수료율 60.1% (모집인원 1,300명 중 782명 수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료 기준 강화와 맞춤형 교육 방안 마련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	제도개선	○ 어린이법제관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인 어린이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지역 어린이의 수료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어린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 생활법령 내용을 단순 게시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퀴즈를 풀도록 하는 참여형 쌍방향 온라인 퀴즈 이벤트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24년 9~10월) - 수료율이 저조한 비수도권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 내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겠음. * 비수도권 지역 내 어린이들끼리 법률 정보, 응원 등의 메시지를 교류하고 법 도서 관련 토론을 하는 등 지역 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유도('24년 11~12월)
○[지적사항] 국민법제관 회의에 참여한 적 없는 국민법제관이 2023년 기준 31.5%에 이르는 등 상당수의 국민법제관이 회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의견제출도 미미하여 제도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등 유사 제도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2023년 기준 국민법제관 200명 중 31.5%(63명) 회의 불참, 설문조사를 포함 의견 제출한 적이 없는 국민법제관 6.5%(13명) ○[시정요구사항] 국민법제관 활동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목적의 다른 제도들과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	제도개선	○ 국민법제관 활동 실적 저조 등의 지적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 폐지를 결정함. - 국민법제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의견제출을 독려하는 등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개선에 한계가 있어 사업 폐지를 결정하고, '25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

○ 2024회계연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지적사항] 법제처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타직보수(110-02목) 수요(채용 후보자 보수 지급)가 발생함에 따라 보수(110-01목) 중 4,700만원을 자체 전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유사한 사유로 인한 기타직보수의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24년에는 5급 경력채용자 4인의 교육기간 임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기타직보수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4인의 채용은 법제처가 2024년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2023년 5월 31일)하기 전인 2023년 4월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안이었음 - 채용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보수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기타직보수를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도록 하는 집행지침에 맞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인사충원 등 인사계획을 면밀히 세워 기타직보수의 이·전용을 지양할 것	주의	○ 2025·2026회계연도에는 기타직보수의 연례적 전용을 방지하고자 채용후보자 인건비 등 기타직보수의 예산부족분을 미리 산출하여, - 예산편성 시점에 보수(110-01)에서 기타직보수(110-02)로 부족분을 조정* 편성함으로써 향후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조정 필요 예산을 보수(110-01)에서 감하고 기타직보수(110-02) 증액 처리
○ [지적사항] 법령해석 처리·회신율이 2021년 50.9%에서 2024년 41.1%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60일 이상 소요 안건이 전체 회신 건의 55.7%에 달하는 등 회신의 신속성이 미흡함 ○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령해석의 회신율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법령해석 안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고, 협의·조정 제도 및 전문위원회·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법령해석의 회신율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음 ○ 앞으로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효율적·전문적 운영 등을 통해 법령해석의 회신율과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법제처는 국내파견 교육훈련자의 국외 현장학습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일반수용비 (210-01목)로 편성된 교육훈련비 중 1,393만원을 국외 교육여비(220-03목)로 전용함 - 연례적으로 이와 같은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 편성 당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이므로 향후 국외교육여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국내파견 교육훈련자의 국외 현장학습 경비를 국외교육여비로 편성·집행할 것	제도개선	○ 2026회계연도에는 국내파견 교육훈련자의 국외 현장학습 관련 국외교육여비를 편성하였으며, - 향후 적절한 비목에 따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 중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그 내용이 바로 반영되지 않아 국민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음 ○ 법제처는 월단위로 법령정보를 업데이트한다고 하나, 중요 생활법령의 경우 개정을 적시에 업데이트하거나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의 개정을 사전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도 한 바 있음 ○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에서 법령 개정을 적시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해 '26년부터는 이용자 수가 많은 일부 콘텐츠의 업데이트 주기를 15일로 단축하겠음 ※ 2026년 생활법령정보 위탁사업 과업지시서에 해당 내용 반영 ○ 또한, 향후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령정보가 적시에 업데이트 되도록 노력하겠음 ※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비용 2026년도 예산 편성(1,555백만원)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법제처는 매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법률안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취지가 아니고 현행 법령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취지의 사업이므로 법령·조례의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 주제가 사업 목적과 맞지 않음 - 2024년 세미나 주제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맞춤형 생활조례정보의 방향”으로,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운영과 관련 있는 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것	제도개선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운영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콘텐츠나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 사항을 중심으로 세미나 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겠음 - 2025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 (10. 28.) 주제를 ‘AI 시대를 대비한 생활법령 콘텐츠 구축 패러다임의 전환’, ‘AI를 활용한 생활법령 콘텐츠 제공 확대 방안’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였음
○ [지적사항] 분기별 전문가 자문료 집행 실적을 보면, 1분기 1건, 2분기 2건, 3분기 7건, 4분기 8건으로 전체 예산의 약 82%를 하반기에 집행함 ○ 세법 전공 자문위원에게 ‘항공안전법 시행령 관련 검토’를 자문하는 등 전문분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적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전문분야에 맞는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연중 편중된 자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제도개선	○ (연중 고른 자문료 집행) ’25년 분기별 전문가 자문료 집행 실적은 1분기 3건, 2분기 3건, 3분기 3건, 4분기 3건으로, 전체 예산의 약 41%를 상반기에 집행함 ○ (전문분야를 고려한 자문) ’25년에는 전문분야와 관계없는 분야의 법령을 자문한 사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전문분야를 최대한 고려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법제처의 입법지원이 입법예고 단계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2021년 32.9%, 2022년 33.7%, 2023년 22.2%에서 2024년 17.4%로 감소하고 있어 법령입법지원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제도개선	○ 입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안의 입안부터 입법예고, 심사·공포까지 입법 소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입법지원을 대폭 확대함 ※ 2023년 5건 → 2024년 3건 → 2025년 10건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2021년 75.2%, 2022년 77.8%에서 2024년 45.4%로 감소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역시 2021년 83.7%에서 2024년 44.8%로 감소함 ○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안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앞으로도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법령안에 대해 원스톱 입법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입법지원이 입법예고 등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2023년부터 시행중인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는 연구용역으로 발굴한 문장 정비안 중 최종 정비안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고, 실제 개정 완료된 실적도 미흡함 - 2023년의 연구용역 3건을 통하여 연구기관이 발굴한 문장 정비 건수는 총 1,976건이었음. 이 중 법제처가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소관 부처에 정비안 초안을 송부한 건수가 533건(27%), 이를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여 선정된 최종 정비안의 건수가 323건(16.3%)임. 이 323건 중 개정이 완료된 건수는 2025년 6월말 현재 18건(0.9%)에 불과함 - 2024년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으로 발굴한 1,646건 중 법제처가 선정한 건수는 392건(23.8%), 이 중 부처가 수용한 최종 정비안 건수는 211건(12.8%)에 불과하고, 아직 정비 실적은 없음 - 최종 문장정비안의 내용에서도, 문장의 조사를 바꾸거나 띄어쓰기를 추가하는 등 경미한 수정만을 하고 있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의 실효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	제도개선	○ 문장정비 사업은 문장 구조를 읽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법령문의 가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음 ○ '25년부터는 정비율 제고를 위해, ①정비 대상 법령의 개정 수요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소관 부처 및 법제처 심사 부서에 문장정비 과제 반영을 요청하는 ‘부처협의안 검토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②법제업무평가 지표에 문장정비 실적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음 ○ 또한, 향후 띄어쓰기 등 문장정비로 보기 어려운 경미한 정비 사항의 경우에는 정비 필요성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되, 문장정비 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 등 문장정비 사업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법제처가 2024년에 실시한 3건의 입법영향분석의 결과 제시된 8건의 개선과제 중 2건만이 정비되었고, 이 중 법령 개선사항이 아닌 행정적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도 1건 있었음 - 행정적 제도개선은 법령에 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에 가깝고, 이는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과 차별화되기 어려우며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소관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가능성도 있음 - 입법영향평가는 타 연구용역(법제처 평균 4,729만원)에 비해 평균 용역금액(8,733만원)이 훨씬 높음에도 하나의 용역에서 두세 건의 개선과제밖에 도출되지 않으며, 소관 부처에서 개선과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향후 입법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제도개선	○ 2025년 입법영향분석의 경우 법령 개선사항 위주로 발굴하여 현재 법령 소관 부처에 개선 권고를 진행중이고, - 2026년에는 여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통 법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병행하여 행정 법령 개선효과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겠음 * 예. 신고제도 등 ○ 또한, 법령 소관 부처에 대해 개선과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입법영향분석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자연어를 활용한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의 AI 법령정보서비스의 경우, AI 환각 현상으로 인하여 허위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유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공적 책임의 문제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큼 - 검색 시 하단부에 “검색결과를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나, 잘못된 법령 정보가 제공된 경우의 위험성을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의 법령정보서비스 구축에 있어 AI 환각 현상을 줄이고, 해당 현상의 발생 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AI 환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여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ISP를 수립('24)하였음 ○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 구축('26~'28) 과정에서 AI 환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특화 모델과 정확성 제고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 [지적사항] 법제처는 2024년 법령정보 제공,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법령심사지원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들에서 상용임금, 일용임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인건비 사업의 보수(110-01)로 9,150만원 전용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음 - 「2024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 ○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향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로의 이·전용을 금지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면밀한 인력 수요 등의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총액인건비 비대상 사업에서 총액인건비 사업으로의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사항] 콘텐츠의 양적 확대과정에서 일부 시각화가 어려운 조문에 대하여 편집만 다르게 하여 소개하거나 해당 법령에서 시각화가 불필요한 조문까지 그림을 추가하는 등 법문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복잡한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식화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단순한 내용으로 도식화 필요성이 떨어지는 조문에도 그림을 삽입하여 별도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제도개선	○ '25년부터는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신규 개발 대상 법령·조문 선정 방식을 개선하였음 - ①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외에 도식화 필요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대상 법령을 선정하였고, ②개발 대상 조문의 도식화 필요성·적합성에 대한 소관 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③도식화 필요성이 큰 조문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 개발 대상 법령 수를 확대(40개→81개)하였음 ○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도 용역기관의 콘텐츠 초안을 대상으로 도식화 필요성·적합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서비스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취지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도식화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문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정하고 콘텐츠별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할 것		○ 더불어, '21년부터 개발하여 제공 중인 기존 콘텐츠에 대해서도 도식화 필요성·효과성을 전수 재검토하여 61건의 개선 필요 콘텐츠를 발굴하였고, 순차적으로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법제교육'은 나라키움 태안 정책연수원 개원 지연(당초 9월→ 11월), 연수원 강의실 무상 사용 및 교육 수요의 예측 미비 등으로 실행이 부진하였음 - 2024년도 예산액 3억 700만원 중 집행액은 4,600만원(집행률 약 15%)임 - 임차료의 불용이 예상되자 4,300만원을 조정하여, 2,500만원은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였고, 1,800만원은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사업의 임차료로 조정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향후 법제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 수요 및 운영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주의	○ 강의실 사용료 정책 변경*(유상 → 무상)을 반영하여 2025회계연도부터 강의실 임차료를 편성하지 않음 * 수요부처가 행정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 (기획재정부, 2024. 8.) - 태안 법제교육원 교육과정 및 교육생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도한 불용액이나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겠음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세계법제 지원(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은 인력 중복투입에 따른 인건비 중복수령 문제가 확인되었으므로, 중복지급된 인건비 추징 등 관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참고로 해당 업체와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에	시정	○ 재발방지대책 수립) 향후 '투입공수 방식'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DB 구축 등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 핵심 기술인력을 타 사업에 중복으로 투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발주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핵심 기술인력에 변동 사항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수 준	조치결과
SW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인력 중복투입에 따른 인건비 중복수령,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프리랜서 투입으로 인한 불법 하도급, 허가받지 않은 인원 교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 [시정요구사항] 법제처는 SW사업 용역 수행에 있어 위법·부당한 인력중복투입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기발생 인력중복 투입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것		하는 등 사업 추진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임 ○ (조치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업체의 인력 중복 투입에 따른 사업비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일 기간 법제처 사업에 중복 투입된 인력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사업비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였음('25년 11월 과기부 사업비 회수 완료)